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학교 현장의 학교 규율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선 두 교사의 보고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중학교 다닐 때 교문지도에 걸려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다. 윤통 검은 색 운동화를 신는 것이 학교 규정인데, 내가 신은 운동화 아랫부분이 흰색이 조금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때 한치의 웅통성 없이 단속하는 교사들에게 환멸을 느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그럼에도 학생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과거의 나와 같이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복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마다 허용하는 정도가 다르다. 교복 아래위, 남방, 넥타이, 신발, 이름표가 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여학생들은 치마길이와 통넓이로 혼구명이 난다. 짧은 치마와 좁은 치마 때문에 애를 먹는 여학생이 많다. 남학생들은 바짓가랑이를 아주 줄여서 입는 경우 혼이 난다. 남방은 노란 색이나 빨간 색 등 조금이라도 색깔이 표시 날 때 혼이 난다. 신발의 경우 남학생들은 신발 앞코가 엄청나게 큰 것을 신고 다니는 경우, 여학생의 경우는 굽이 높은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된다. 복장 말고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머리모양이다. 무스를 바르거나 기름을 바르면 규제 당한다. 여학생은 긴 머리를 묶어야 한다. 남학생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어도 안 된다. 여학생들의 머리핀이나 귀걸이 반지 등도 규제 당하며, 소지품 중에서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많다. 복장을 단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약 1시간씩 복합적으로 단속한다. 적발 당하면 신체적 고통이 가해지거나 복장불량자로 이름이 적혀서 학생부에서 담임선생님에게 통보하거나 학생부에서 지도(?)한다. 운 나쁘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많은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얼어맞기까지 한다. 학생들 중에서 아침 교문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주 아침 일찍 등교하거나, 아주 늦게 등교한다. 아니면 담을 뛰어넘는다. 수업 중에 복장검사, 혹은 소지품 검사라는 시간을 할애하여 단속할 때도 있다. 정말 회한한 현상이다. 수업을 그렇게 신성시(?)하는 교사들이 이

런 단속을 어쩌지 못하고 있다. 혹은 학생부 선생님들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순서를 통하여 적발될 때도 있다. 학생부로 끌려가서 혼쭐이 난다(신병철, 서울 석관고 교사)."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규율들이 존재할까? 머리가 좀 길면 정말 공부에 그렇게 방해되는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아 못된 학생, 못 된 인간이 되는 지름길로 빠지는 것일까?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는 복장에 신경을 쓴 만큼 공부에 쓸을 시간이 짧다고 한다. 그러니 손질을 많이 해야 할 긴 머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성이 작은 짧은 머리가 더 좋다는 의견이시다. 그런데 학생들의 얘기는 다르다. 그 짧은 머리를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해 보려고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얘기이다.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학교가 생긴 이래로 선생님의 말 씀이 옳은 것으로 되어 왔으니 더 논의할 필요는 없겠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율들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푸코(Michael Foucault)가 표현한 바에 따르면 원형감옥 내의 죄수들처럼 학생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는 만큼, 한 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복장이 무엇보다도 첫째의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학교는 가장 비민주적인 곳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는 자체의 규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율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바탕한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는 정작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칙의 제정에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는 학생이 아직 미성숙자인만큼 규율을 정할 만큼의 자율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근거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학교를 다시 돌아볼 때가 되었다. 너무 많은 규율들이 쓸데없이 많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두 번째 교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과연 학생들이 학교 안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것 말고는, 점심 시간에 밥 먹는 것 외에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온통 규제 속에 있거든요.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반갑게어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오는 사람 아침부터 훑어보고 있으니, 가뜩이나 오기 싫은 학교, 교사인 저부터도 들어가기가 좋지 않은데, 별 재미도 없는 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밖에서 놀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은 1교시 끝나고 오기도 하고, 2교시 끝나고 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담임들은 지각했다고 닥달하고... 할 수 없이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집에 전화하면 학생은 부모한테 얻어맞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양상인데요.할 수 없이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혀 규제를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너희들을 아래 위로 절대 훑어보지 않겠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테니,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내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거다. 왜냐하면 담임하면 뭘 지적하는 사람으로 학생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대해라. 그래도 학생들은 내 앞에서 어떤 때는 복장을 고치고 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말고 그냥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담임이 부르면 뭘 지적당하나 이것부터 보고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무실에 들어오면 왜 교실에서 예쁘다고 매고 있다가도 그것도 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있다가 내 앞에서 양말 신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와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그랬더니 우리 반 학생들은 아침에 10명 정도 지각하고, 5교시 끝나면 4~5명이 도망가고 해서, 출석을 통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제가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곤 합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것은 제가 담임 역할을 개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자신보다 못한 선생님이 있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반에 들어가면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도 하루에 10명 정도 지각생이 있다 보니 지각을 왜 했는지 알아보게 되고, 아침부터 반 아이들한테 인상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 통제를 안 하겠다고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내가 이

런 말을 지속하다 보면 너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다. 규제에 익숙한 아이들이라 3월말 정도 되어 의견을 들으면 암전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들을 좀 잡아달라, 학급을 잡아달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정도까지 쭉 그렇게 가면 학급이 붕괴될 상황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2학기 때 정도면 분위기가 좀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규제 속에서 자율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힘드는 일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른 교사들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게 되고... 자기들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자치활동이나 학교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의 규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 사회와 청소년의 의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규율은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우리의 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율들은 “학교 징계규정” 혹은 “학교 선도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대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뉘며, 수를 세어보면 약 80여가지가 된다고 한다. 학교에 이렇게 많은 규율들이 존재하는 이유, 혹은 논리적 근거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하튼 학교에서의 이와 같은 역압적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학생의 삶은 폐폐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의 바른 모습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 규율을 가운데 두고 학생과 교사가 숨바꼭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의 권위와 학생의 존경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교육적 신뢰관계는 성립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바른 모습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학교 규율의 실체에 대한 보다 솔직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2. 목 적

이 연구에서는 현행 학교 규율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토대로,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공동체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학교의 규율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의 자율적 삶을 꾸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서 상존해 오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는 정책 대안을 형성하는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구방법을 택한다. 학교규율에 관한 철학적, 법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를 위해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의 학교 규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본 연구의 핵심적 영역인 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분석을 시도하며, 마지막으로 대안 탐색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를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규율의 개념 및 규율의 타당화 근거

1) 학교 규율의 개념

학교 규율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인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의 집합이다. 그것의 목적은 학교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목적 달성을 목표로 한다.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학교는 미성년자를 그 조직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과는 다른 규칙형성과정과 적용방식, 그리고 규칙적용목적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여 학교조직이 운영되므로 규칙의 형성과정과 그 적용절차와 적용 목적에 일반적인 다른 조직들의 그것과 차별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왔으며, 그러한 용인 속에 학교 규율은 세대가 변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규제 항목만이 늘어났을 뿐,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다.

학교의 규율을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복장과 용모에 관한 규율, 교수 학습과 관련된 규율,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규율,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음주, 흡연, 약물복용 등), 형법위반에 관한 규율(절도, 폭력 등),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 출결과 관련된 규율,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규율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규율이 학생들에 의해 위반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는 훈계에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까지의 위계에 따라 학생 보호 및 선도의 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규율위반 시 적용되는 조치에 따라 처벌과 징계로 나눌 수 있다¹⁾. 처벌은 꾸짖는다거나 기립하게 하

1) 조석훈,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pp. 11-12

는 것 등으로 체벌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처벌은 사실행위로서 행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학교장의 위임에 의해 개별교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벌이고, 이에 비해서 징계는 법적인 효과(당해 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신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 의미)를 수반하는 것이며, 학교의 공식적 처분으로서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만이 그 처분권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제정되어 사용되는 규율은 그 내용과 위반 시 적용되는 절차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교규율의 내용과 그 적용절차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2) 학교 규율의 타당화 근거

(1) 학교 규율의 논리적 근거

학교에 이렇게 많은 규율들이 존재하는 이유, 혹은 논리적 근거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몇 가지 가상적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효율성의 논리이다. 즉,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일인데,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목표된 바의 성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데 있으니, 공부 이외의 그 어떤 관심으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성인들은 이러한 소음과 유해환경들로부터 미성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율을 만들어 왔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만약 그러한 규율이 오히려 교육적 성취를 방해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찾아서 성인들에게 규율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훈육으로서의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다. 교육은 정의상 엄한 훈련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학교에 존재하는 규율 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학교들이 아직도 교복 착용을

전통화하고 있고, 영국의 사립학교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해 엄한 규율 훈련을 하고 있는 예가 훈육으로서의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일종의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화된 교육과정이 아닌 만큼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에 항상 마찰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최근 체벌을 없애는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선도카드, 벌점카드제도를 수행평가제도 안에 통합하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을 공식화된 교육적 성취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셋째, 공교육 제도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로서의 성격에서 규율의 논리가 성립된다. 이는 푸코(M. Foucault)가 말하는 바의 원형감옥의 비유가 학교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성인사회와 기존 사회질서에 후세대를 순응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 비판이론들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폴 윌리스(Paul Willis)가 말하는 ‘노동자 길들이기’가 그 대표적 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순치된 노동력 재생산 방법으로 각종의 규율 훈련이 존재한다는 견해이다.

넷째는 교사와 학생간의 권력관계로 보는 정치적 견해이다. 즉 교사들의 교수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밀학급이 상존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권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교실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이러한 견해에 가세된다. 실제로 교사들은 다인수 학급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인정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들의 이러한 통제를 무책임한 편의주의로 해석할 것이다.

(2) 학교 규율의 법철학적 근거

학교 규율에 대한 네 가지의 논리는 모두 학생 편에서 세워졌다가 보

다는 교사와 학교의 입장에서 세워지고 있다.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학생은 왜 그러한 규제를 당해야 하며, 자유를 속박 당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즉, 학생에게는 과연 그러한 규제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없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학교의 제도적 특성에서 학생의 재학관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어떤 지위에 놓여 있는가 생각해봄으로써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최윤진(1997)은 이를 특별권력관계이론과 재학계약설의 두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학교는 국가로부터 국민교육의 의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 밖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안전이나 이익을 고려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의무부과와 함께 권리 제한이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의 재학관계 때문에 학교는 학생에 대해 규율을 정할 수 있는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학생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이미 인정하고 재학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은 분명히 한 사람의 청소년으로서 국법이 정하는 바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학생의 이러한 자유는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보호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나라 학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규율들은 모두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문의 자유란 청소년에게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지적 정신적 발달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과서, 도서에 대한 통제는 그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양심, 지식,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학생들의 신문발행, 컴퓨터통신을 통한 견해의 발표 등은 기본적인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집회 결사의 자유도 정치적 결사와 사교적 결사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라고 해석된다. 각종 교외 서클을 불법서클로 규제하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자유의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자유의 침해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다. 예컨대 부당한 압수, 수색은 금지되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소지품 검사는 심각한 자유 침해 행위인 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의 복장과 외양에 대해서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규제되고 있다.

3) 학교 규율의 역할

학교 규율은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은 학교의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 ‘하여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식의 행위의 가치기준을 정하여 학생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서유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목적에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의 학교에서 규율이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겠다.

(1) 산업화 시대의 학교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그 사회가 ‘어떤 인력을 육성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 규정된다. 이것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뤄져 온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1960년대 이후의 국가 주도의 소위 근대화 즉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양적 측면에서의 고도성장을 도모했다. 공장을 짓고, 값싼 노동력을 채용하고, 주로 수출을 도모했다. 그리하여 번 돈으로 또 공장을 짓고(값싼 노임으로 많은 투자가 가능하기에), 또 값싼 노동력을 채용하고, 수출을 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을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정부의 사활을 걸고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정부가 외자나 은행돈을 마구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수출이나 내수를 적극 지원하거나 보장해 주었고, 값싼 노임도 보장해 주었기에, 세벌들은 끊임없이, 큰 공장을 짓는 노력을 기울

였고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경제 규모와 비대한 차별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의 질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된다. 기술은 외국의 2류 기술을 베껴 오면 되었고, 돈은 은행이나 외국에서 빌리면 되었고, 제품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원가 절하를 통해 싸게 팔면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핵심 부품은 일본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고, 첨단 산업보다는 선진국의 2류 산업 같은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고, 많은 외채와 은행의 부실, 정경유착으로 인한 자율적이지 못한 비틀린 시장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측면에서의 고도 성장을 위해서는 그것에 기꺼이 헌신하는 값싼 노동력이 다양으로 필요했다. 그리고 소수의 관리자들, 즉 권위 있는 정부 관리와 기업 경영자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 육성이 바로 교육목적이 되었다.²⁾ 즉 대학교육이 관리자들과 경영자들 즉 엘리트 육성을 담당해 왔다고 한다면, 중·고등학교 교육은 전자 즉 산업현장에서 헌신할 값싼 노동력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되고, 한편으로는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선별하는 기능도 가졌다.

그리하여 교육은 엄격한 국가 통제하에 소수를 선별하여 상위 교육기관인 대학으로 진출시켜 관리자로 육성하고, 중·고등학교는 늘어나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다수의 국민을 값싼 노동력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육목적이 되었던 것이다. 대학정원의 소수 정예화와 중·고등학교 교육의 대중화 정책은 바로 그러한 교육목적을 뒷받침한 것이기도 했다. 대학 입학생은 69년 6만에서 79년 16만 정도로 미미한데 비해, 69년 29만이던 고등학교 입학생이 79년 92만 명으로

2) 이러한 교육의 시행을 뒷받침한 것이, 미국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고,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로 규정한, 우리나라 일부 교육학자들의 교육학 이론이다. 이들은 교육은 미리 작성된 계획표에 따라, 그것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가에 집중함으로써, 산업화시대의 값싼 노동력 육성을 뒷받침하였다.

급팽창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생 대비 대학입학생의 비율은 69년 20퍼센트 정도에서 79년 17퍼센트 정도로, 경제 발전에 역행하여,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³⁾

(2) 학교교육에서의 규율의 역할

이러한 교육목적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학교 규율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관리자의 지시에 기꺼이 헌신하는 값싼 노동력으로서의 에토스 육성을 위해서는 통제에 순응하는 인간상 육성이 필요하고, 학교 규율이 바로 이 통제에 순응케 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즉 '통제'가 학교 규율에서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되었던 것이다.⁴⁾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학교 규율은 군대식 상명하복 논리로, '통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제정되고 적용되었으며, 용의복장에 대한 군대식 통제⁵⁾와, 교사권위의 절대시와 그에 대한 반항의 엄단,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의 최대한 억제 및 학생 주체적 모임이나 발언에 대한 최대한의 통제(심지어 죄악시까지 한다)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통제' 위주로 인해, 학생들의 '자율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1987년 6월항쟁 이후 고등학생들의 학내 민주화 투쟁으로 학생회의 직선제화 등 학생들의 자율성 인정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규율의 대부분은 그대로 존속해 왔다.

3) 이상 강순원, 한국 교육의 정치 경제학(한길사, 1990) p.116 참조

4) 통제 위주의 규율은, 중앙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선정되어 포장된 특정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학교교육 과정 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과대학교, 콩나물 교실의 다인수 군중이란 교육환경 때문에도 필요했다.

5) 용의복장에 대한 통제는, 머리는 귀밑 3cm, 눈썹 위 몇cm, 여학생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을 것, 치마는 무릎 밑, 양말은 흰 양말로 몇 cm까지 접어 올릴 것, 겨울외출 긴 코트 착용 금지, 긴 목티셔츠는 흰색 또는 검정색만 허용 등 용의복장에 대한 통제는, 학생들을 사회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다.

또한 학교 규율은 전적으로 중앙의 교육부 차원에서 모범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내려지고, 학교에서는 교장이 중심이 되어 그것에 준해, 구성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학교 규율은 제정이나 시행에서 정권적 차원의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절대시하며, 학생들을 전적으로 거기에 맞춰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위에서 말한 군대식 통제와 함께 교육적으로는 '선도'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중앙에서 만든 기성가치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치의 일방성을 강요하며, 그러한 가치에 따르게 학생들을 순치시키는 '선도'(기성가치의 절대 옳음의 바탕 위에서 학생은 미숙하고 치우친 존재임을 전제한 개념임) 위주로 학교 규율은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여기서 학생들의 의사 반영 통로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사들이나 학부모를 통한 간접적 반영의 기회조차도 거의 없었다. 즉 '선도' 위주의 규율에 있어서, 학생은 그저 수동적인 규율적용 대상일 뿐이어서, 자기 집단의 가치의 의미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들이 지킬 규율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 동안의 학교의 규율은 정권적 차원의 산업화를 위한 인력 육성이란 교육목적을 위해, '통제'와 '선도' 위주로 진행되어 정권과 윗사람의 지시에 헌신하는 값싸고 유능한 노동력 육성을 뒷받침하였다. 그리하여 학교 규율 실천의 주체인 학생들은 전혀 그 존재의 권리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규율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율'과 '참여'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다.

2. 학교 규율의 실태 및 문제점

학생을 인간답게 가르치고 키운다는 학교가 실상은 학생들 인권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대학입시를 위한 점수, 성적 향상이 목표로 작용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학생들 인권은 모두 성적 향상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맥을 못쓴다. 이런 현황을 형식적으로 담고 있는 학교의 규율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1) 학교 규율의 제정 절차

모든 학교에는 학생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규율이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제정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교사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대부분 모른다. 모른다는 현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규율이 동일하다. 남, 여에 따라 중, 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경향은 규율이 정해지는 절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 규율 혹은 규정의 내용은 실상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교육적으로 큰 사건이 나거나 교육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어서 학교 규율이 문제가 될 때, 교육청에서는 학교 규율의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이 내려온다. 이 공문에서 친절하게도 규율의 예시가 담겨져 있는데, 이 예시 규율이 거의 대부분 수정 없이 각 학교의 규율로 자리잡는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학교 규율은 대동소이하다.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교육청의 공문에 담겨진 예시 규율에 의해서 뼈대가 잡힌 학교 규율은 가끔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실제로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교 규율 혹은 규정에 대한 개·수정의 절차가 일단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웬만해서는 규율과 규정이 개정, 수정되는 일은 없다. 일정한 시기도 없이 학년초가 되면 각 부에서 관찰하고 있는 각종 규정들을 검토해서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때가 바로 규율의 개·수정 시기가 된다. 이런 일을 총괄하는 연

구부에서 각 부에 이전의 학교규정집을 한 부 씩 나눠주고 문제가 있는 규정들을 검토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한다. 각 부에서 검토된 규정, 규율들은 이렇게 수합되어 교장의 결재를 받아 학교 규정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몇 해에 한번씩 인쇄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학생 생활과 관련된 규율은 선도부에서 담당한다. 부장이나 기획 교사가 살펴보고 또 관심있는 교사가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 넣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예시로 내려오는 규정을 뼈대로 학교 사정에 따라 각 담당 부서에서 개·수정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학교장이 결재를 통하여 결정하는 형식이다. 학교의 제 규정의 개정, 수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쟁기는 운영위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실제로 학교 규정은 학교의 소극적 태도와 교육청의 학교장악력으로 말미암아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경우와 내용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하는 절차도 대단히 즉흥적이고 단선적이다. 따라서 이런 규율 제정 절차에 교사들의 의견이 끼어 들 여지가 없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견해를 과감히 개·수정안으로 제시하기는 무리다. 규율과 규정에 대한 일정한 공론화의 계기도 없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이 끼어 들 여지는 더더구나 없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사실상 비밀스러운 과정이기도 하다. 학교 규율은 여러 사람들의 무관심을 틈타 실제로 교육청과 교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학교 규율의 적용 방식

학교 규율 제정 절차가 공론 없이 즉흥적이고 단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그런데 이것만큼 또 문제 있는 부분은 그 규율의 적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규율 자체가 공신력을 지니지 못한 채 위로부터 강요되기 때문에, 교육 주체의 합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규율로서의 권위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규율이 교사들을 통해서 학

생들에게 적용되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학교 내에서 규율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통제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학교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선도부 소속 교사가 그 한 주체이며, 학생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면서 반 학생들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또 하나의 주체이며, 그 나머지 교사가 또 한 주체이다.

학교 경찰로서의 선도부 교사들은 학교内外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율을 가능하면 그대로 적용하여 규정대로 지도하는 편이다. 그러나 규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교사들마다 천차만별이다. 규정위반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식도 다양하다. 규정위반의 판단기준도 일정하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벌어진다. 지도 방식은 체벌부터 시작하여 관용에 이르기까지, 학생 부로 호출을 통한 엄격한 규정 적용부터 기합이나 심부름, 청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의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체벌이나 폭언이다. 체벌이 심한 경우는 거의 즉결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담임교사도 학생들의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권자로서 대단한 존재다. 실제로 학생들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는 담임교사이며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책임도 담임교사가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의 규율 위반의 경우에 대부분 담임교사에게 통보되고 경미한 경우는 담임 선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폭행이나 드러난 시험 부정행위 등과 같이 공개된 경우에는 선도부를 통하여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당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경미하거나 애매한 경우(예를 들면,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등)는 담임의 재량이 발동할 수 있다. 담임교사에 따라 규정 적용의 방식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담임의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과 인간적인 정으로 연결되어 공식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대신, 체벌, 기합부터 시작하여 훈계, 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담임교사에게 부여된 학생 교육의 책임이 실제로 대단한 만큼 일반 교사들은 담임교사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교내 흡연자 특별 지도 계획]의 예는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본교 교내 흡연자는 다음과 같은 특별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1회 적발시 : 1) 학생부에서 담임에게 통고하여 지도

2) 담임이 자체 지도

3) 반성문 1회 제출

2회 적발시 : 1) 반성문 3회 제출

2) 교내 봉사 활동 3일

3회 적발시 : 1) 교내 봉사 활동 6일

2) 반성문 6회 제출

3) 학부모 내교하여 각서 제출

선도부 소속도 아니면서 담임교사도 아닌 경우, 나머지 교사들은 합의도 되지 않은 규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지 학생생활지도에 대부분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래도 우연히 규정을 어긴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선에서 체벌이나 훈계로 해결하거나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징계 사안이 사회봉사 이상일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거쳐 징계정도를 결정한다. 선도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부장이 사무를 주관하며, 교무부장, 윤리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학년부장과 징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심의 전에 담당교사, 담임교사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부 담당교사가 검사 역을, 담임교사와 학생의 보호자가 변호사역을, 그리고 선도위원회 위원들이 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꼴이다. 그러나 선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규율의 적용방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처벌 규정이 실제로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점수에 반영이 되고 내신성적 중에 출결사항이 점수로 반영되면서 사고 근태(지각, 조퇴, 결파, 결석)가 학생들의 점수를 깎아내리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사고 근태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선도처분, 즉 퇴학은 실질적으로는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퇴학당하지 않는다. 교육청에서는 소위 문제학생들을 가능하면 학교에서 퇴학시키지 못하게 공문 지시를 내려보내고 있다. 아마도 학교에서 제적당한 소위 불량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경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처벌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것이다. 명분이야 학생들의 교육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학생의 문제점을 교정하려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없이 그대로 학교에서 수용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회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파렴치한 행위, 범법행위까지도 학교에서는 적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3) 영역별 규율의 실제

이제 학교 규율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체벌 없는 학교'가 사회에 공론화 되면서 체벌 대신 벌점제도가 첨가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벌점제는 아직 많은 난점이 있고, 교사에게는 잡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벌점제를 설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1) 복장과 용모에 관한 규율

복장과 용모에 관한 규율은 학생선도규정 중에서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을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활동으로 처벌하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학생 용의 복장 규정에 기록되어 있다. 학생 용의 복장 규정으로서 남녀 공학 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어느 고등학교(남여공학)의 [학생 용의 복장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의 용의 및 복장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여 품위를 지키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복장) ①복장은 규정된 교복 <별표1>을 항상 단정하게 착용하게 한다. ②교복은 동복, 하복, 춘추복으로 구별 착용하되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동복 :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하복 :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춘추복 : 5월 및 9월 (각 1개월)

제 3 조(두발) 1. 남학생 ①스포츠형으로 조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게 하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③파마, 염색 및 스프레이이나 무스 사용을 금하고 위 ②항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혐오감을 주는 특수형 조발은 금한다. ④승려형 완전 삭발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2. 여학생 ①단정한 단발, 학생 커트형을 원칙으로 한다. ②옆 또는 뒷머리가 양 어깨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③파마, 염색, 드라이 등을 하지 않으며, 스프레이이나 무스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④색깔 있는 머리핀, 머리띠, 장식 달린 머리끈을 착용할 수 없다.

제 4 조(용모) ①남학생은 수염을 반드시 깎아야하며 여학생은 얼굴 화장을 금한다. ②색안경이나 도수 없는 안경의 착용을 금한다. ③손발을 항상 깨끗이 하고 손톱, 발톱을 짧게 깎아야 하며, 매니큐어는 칠하여서는 안 된다.

제 5 조(신발) ①운동화나 학생화(검정)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샌들,

부츠, 사치성 구두(에나멜, 락카화 등) 및 신사화나 숙녀화(하이힐 등), 또는 군화 등을 신지 아니한다.

제 6 조(양말) ① 남학생은 검정, 감색, 밤색, 흰색 등의 단색 양말을 착용한다. ② 여학생은 동복 착용 시 스타킹을 착용하고, 춘추복, 하복 착용 시는 흰색 짧은 양말만 착용한다. ③ 숙녀용, 무늬 있는 스타킹은 신지 아니한다.

제 7 조(책가방) ①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학생용 가방을 사용한다. ② 특수하고 사치스러운 성인용 가방(007가방 등)과 숙녀용 핸드백이나 요란한 캐주얼백, 비닐 백, 종이 백 등의 사용을 금한다.

제 9 조(휴대품) ①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장신구(목걸이, 목걸이 시계, 귀걸이, 반지, 팔찌, 브로우찌, 선그라스, 화려한 허리띠 등)을 금한다. ② 뼈베나 이동전화, 소형 라디오, 녹음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③ 립그로스, 립스틱 등을 휴대할 수 없다.

◎서울 어느 여자고등학교 [용의 및 복장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용의 및 복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상 단정하고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두발) 1. 학생 컷트나 단발(교복의 깃이 닿을 정도의 길이)로 한다. 2.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으며 옆머리는 귀를 가리며 뒷머리를 위로 둑글게 자르지 않는다. 3. 머리핀이나 헤어밴드는 눈에 띄지 않은 색(진한 녹색, 갈색, 검정색)으로 한다. 4. 퍼머, 염색, 드라이, 무쓰 바르기 등으로 원래 머리의 모양과 특성을 조작하지 않는다. 5. 피치 못할 사유로 두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 학교장의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제 3 조(복장) 1. 반드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동복, 춘추복, 하복, 방한용 외투) 2. 교표는 동복과 하복에는 왼쪽 깃에 달고, 춘추복에는 엎주머니 위에 달다. 3. 교내에서는 반드시 명찰을 폐용한다. 명

찰은 학년별로 초록색, 자주색, 남색으로 구분한다. 4. 양말은 동복에는 검은색 학생용 스타킹을 신거나 살색 스타킹 위에 회색 커버를 신고 춘추복 하복에는 흰색커버를 신는다.

제 4 조(신발) 1. 목이 짧은 기본형 운동화나 검정색 또는 갈색 계통의 굽이 낮은 여학생용 구두를 착용한다. 하복 입을 때는 굽이 낮은 흰색 학생용 샌들을 착용할 수 있다. 2. 목이 긴 운동화나 구두 밑창이 두껍거나 굽이 높은 신발, 방한화, 농구화, 색상이 현란한 패션 운동화, 특수화, 군화, 남자용 구두, 슬리퍼 등의 착용을 금한다. 3. 실내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흰색 실내화를 착용하고 운동장에서는 실외화를 착용하며 형겼으로 만든 신주머니에 신을 넣는다.

제 5 조(가방) 1. 가방은 학생용 가방이나 짹을 착용한다. 짹은 양쪽 어깨에 멘다. 2. 현란한 원색의 짹, 숙녀용 백, 형겼가방, 군용형겼가방, 여행용 가방은 금한다.

제 6 조(소지품) 1. 항상 학생증, 손수건을 소지한다. 2. 반지, 목걸이, 팔찌, 브로우치, 귀걸이, 기타 부착물과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물건(삐삐, 화장품, 흥기)을 소지하지 않는다.

제 7 조(용모) 1. 손, 발을 깨끗이 하고 손톱을 짧게 깎는다. 손톱을 기르거나 메니큐어를 칠하지 않는다. 2. 얼굴에 화장을 하거나 눈썹을 다듬거나 귀뚫기 등을 금한다.

이런 [용의복장 규정]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생들의 개성적인 생활을 옥죄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대단히 통제를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 비싸지도 않은 것을 조금 예쁘게 하고 다니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홍분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생들을 수도승쯤으로 인식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자세가 만들어 낸 규정이 아닐까 여겨진다.

아침에 교문을 통과할 때 선도부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지적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이 많은 설정이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이런 [용의 및 복장 규정]이 상당한 명예로 작용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모양의

머리 모양, 교복 고쳐 입기 등이 교문에서 모두 통제 당하기 때문이다. 통제하는 근거로 이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동의하여 만들어진 규정은 아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심각한 의견대립, 감정대립의 요소가 이런 규정들이다. 넓게 규정하고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 중에서 용의 복장에 별 관심 없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교표(뺏지)나 이름표가 없는 경우에만 교문 통과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단한 불만이다. 교복도 패션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인지 요즘은 교복을 줄이거나 변형시켜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교문에서 지도교사와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2) 교수 학습 활동과 관련된 규율

(서울 어느 고등학교(남·여공학)의 선도 규정 중에서)

1. 훈계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언행이 불손한 학생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3.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교사 중 부정 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4.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5.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6.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 7.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8.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9. 선도처분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3)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규율

- 1. 훈계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2.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 3.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4.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타인을 구타하거나 흥기를 소지한 학생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5.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흥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이유 없이 상, 학급생 간에 폭력을 행한 학생

-부녀자를 회통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6.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7.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8.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불온 문서를 온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9.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10. 선도처분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4)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음주, 흡연, 약물 복용, 풍기 문란)

1. 훈계

2.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도박을 한 학생

3.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4.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5.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6.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7.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8.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9.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10. 선도처분

(5) 형법 위반에 관한 규율(절도, 폭력 등)

1. 훈계
2.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 도박을 한 학생
3.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4.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 타인을 구타하거나 흥기를 소지한 학생
5.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 흥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6.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7.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8.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 된 학생
 -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금품을 강탈한 학생
9.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 복용한 학생
10. 선도처분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6)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

1. 훈계
2.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3.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4.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5.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6.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7.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8.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9.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10. 선도처분

(7) 출결과 관련된 통제 규율

1. 훈계

2.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를 한 학생
3. 훈계 또는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4.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 무단결석,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5.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 무단 가출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한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6. 학교 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7.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1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연(連) 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8.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9. 특별교육 또는 선도처분
10. 선도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무단 결석으로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학생이 연(連) 2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8) 학생회 활동에 대한 규제 규정

학생 자치활동의 중심인 학생회 규칙도 학생들의 자주적 활동을 제약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회 회칙을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통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조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금지활동: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기능: 이 회의 모든 활동은 본교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지도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회칙개정:

1. 이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발의와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자문과 대의원 재적인원 2/3이상의 동의로써 한다.
2. 회칙의 개정이 발의되면 운영위원회는 결의된 날부터 2주일 안에 회칙개정안을 만들어 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협의(추인)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새 회칙으로 확정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대의원회 회의: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위원회

- 구성 :
1. 학생지도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각 부에 지도위원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4. 총무부 지도위원은 학생주임으로 한다.

- 기능 :
1.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5)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전항은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학생회 회칙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전권을 지도위원회, 그 위원장인 학교장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학생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를 거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모습을 띠기 쉽다. 특히 분단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지형이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학생회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한다. 학교장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만 한다면 문제가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교장이 나올 리가 만무하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

둘째,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학생들의 자치조직이 있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자신들의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성급 견을 때 손들고 뺑과 우유 먹는 것이 고작이다.

셋째, 지도위원회의 조직도 전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형식을 키우겠다는 뜻 이외는 아무 것도 아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회를 위한 전교직원으로 구성한 학생지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

◎서울 어느 고등학교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석관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본교의 교육 이념과 교육방침에 따라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자율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자치능력을 길러, 애국 애족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역량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선도를 받아 선도 중인 회원은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활동)

①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5.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6.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치활동

②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활동) 본 회의 회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임명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기구) 본 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대의위원회
3. 지도위원회

제8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장 총회

제9조(구성) 본 회는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10조(권한) 본 회는 학생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2. 기타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의 토의와 의견의 발표

제11조(의장) 본 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유고 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단,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제12조(회의 및 소집)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본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제17조에 명시된 각부의 부장, 차장 각 1인씩으로 구성한다.(단, 운영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학예부는 차장 2인을 둔다.)

제15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개 학기간으로 한다.

제1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의 집행기구로서 다음의 기능을 지닌다.

1. 학생회 자치활동 전반의 기획 및 운영

2. 학생회의 업무집행

3. 운영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결정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요구한 사항의 집행

5. 자율적인 학교 질서화립에 관한 사항 처리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부서)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케 한다.

1. 총무부 : 본 회의 사업, 연맹활동에 대한 기획 및 추진,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예회 : 학, 예술활동 및 회원의 교양, 취미, 오락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선도부 : 학내질서 및 교풍확립에 관한 사항
4.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운동에 관한 사항
5.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요청이나 회장 또는 운영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의결 및 집행)

- ①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4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한다.

제20조(임원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하며 부를 대표한다.
4.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임원선출 및 자격)

1. 회장,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며, 세칙은 제7장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부장 및 차장은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생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인준한다. 단, 선도를 받거나 또는 1일 이상의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이 있는 자는 결격사유가 된다.

3. 각부 부장은 학생회장 인준 당시의 2학년 1명으로 하고, 차장은 1학년 1명으로 한다.(단, 학예부는 차장 2인을 둔다.)

제 4 장 대의원회

제22조(구성) 대의원회는 각 학급의 정·부반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의장)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24조(임기) 대의원 임기는 2학기간으로 한다.(단 1학년의 경우는 1학기로 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지닌다.

1. 학생회 사업계획의 심의와 의결 및 결과보고의 접수 및 승인
2. 학생회 예산과 결산을 확인한다.
3.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토의
4. 학생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 출석요구
5. 기타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

제26조(하부조직) 대의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의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두며, 정·부회장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은 소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1. 총무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총무부의 안건을 협의한다.(예: 예산 및 결산 등)
2. 학예소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예부의 안건을 협의한다. (예: 둘꽃이제의 질서 유지 및 운영사항에 참여 등)
3. 지도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도부의 안건을 협의한다. (예: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등)
4. 봉사소위원회: 운영위원회 봉사부의 안건을 협의한다. (예: 학우를 돋는 성금 모금 등)
5. 체육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체육부의 안건을 협의한다. (예: 체육대회 행사 등)

제27조(회의)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 학기초에 개최된다.
-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학생회 운영위원회 인원 3분의 2이상 요구가 있을 때
 - 4. 운영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5. 대의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단, 학생회, 운영위원회 임원의 발언권은 (1), (3)항에 의해 소집된 경우에 주어진다.)
- ④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운영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각 소위원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가질 수 있으며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전체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 ⑥ 각 소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지도위원회**제28조(구성)**

- ① 지도위원회는 원활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둔다.
 - 1. 전체지도위원회
 - 2. 운영지도위원회
- ② 전체지도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학교장이 된다.
- ③ 운영지도위원회는 총무, 학예, 지도, 봉사, 체육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교감이 의장이 된다.

제29조(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기능을 갖는다.

1.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
2.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지도
3. 학생회 임원 임명에 관한 결격 사유 등의 조사와 지도
4. 학생회 개정에 관한 지도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제시, 권장, 안내 및 지도

제 6 장 재 정

제30조(회비)

- ①본 회의 경비는 육성회비로 충당하며,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②육성회 예산 중 학생회 활동 예산은 지도위원회의 지도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31조(회계년도) 학생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 ①학생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20일 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운영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 ②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회장은 운영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
- ③예산편성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지도위원회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예산의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는 학교회계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7 장 선 거

제34조(선거시기)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선거는 1학기 말 중에(방학 1주일 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선거권, 피선거권)

- ① 선거권은 본 회 회원에게 있다.
- ② 피선거권은 2학년 회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게 있다.
 - 1. 선도를 받은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의 결석이 있는 자
 - 3. 전학년도 1, 2학기 학년 석차가 각각 상위 50%이내인 자

제36조(입후보)

-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각각 유권자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추천인은 정·부회장으로 각각 2인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추천인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37조(등록취소) 입후보자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거나 입후보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밝혀 등록 사유의 무효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공고가 난 이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선거일) 선거일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방법)

- ① 선거는 회원 전체의 민주적인 단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남녀 구별 없이 최다득표자 1명으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투표하여 재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하며, 이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때에도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③ 정·부회장 입후보자가 각각 단일 후보일 경우는 회원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정·부회장의 당선자 및 입후보한 자가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 후 운영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41조(당선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와 모든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공고한다. 단, 선거과정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공고한다.

제42조(정·부회장 인준) 당선인이 공고되면 학교장은 이를 인준한다.

제43조(선거인 명부)

- ①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명부로 대치한다.
- ②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간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으로 한다.
- ③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 2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심하여 그 가부를 이의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선거관리위원장 1인

2. 선거관리부위원장 1인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선거관리위원은 1, 2학년 반장으로 한다. 단,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 시행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과 무효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홍보하여 그 기준에 맞추어 투·개표를 해야한다.

제46조(재선거 및 보궐 선거)

- 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생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공석이 된 부회장은 신임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학생회장,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고, 당선인은 전임자의 임기만 재임한다.
- ④ 부회장 궐위 시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⑤ 학생회장, 부회장이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47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대의원 1/3이상의 요구로 발의하여, 대의원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체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학생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은 후 학생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8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

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점제 시행 규칙

- ▷ 집단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이유없이 상·하급생 간에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금품을 강탈, 절취, 사취한 학생
- ▷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동맹휴학을 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정치 관여 행위나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서울시내 어느 고등학교의 규정)

[학교 내의 봉사] 별점제

-별점 10점 이상 : 학교 내 봉사 3일 이상

- 20점 이상 : 학교 내 봉사 5일 이상
- 30점 이상 : 학교 내 봉사 7일 이상 또는 사회 봉사 10시간 이상
- 40점 이상 : 선도위원회 회부하여 징계
- 별점 30점 이상의 징계 처리 내용은 위반 사항을 명시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별점 1점>

- ▷ 용의 복장 불량
- ▷ 수업중 음식물 취식
- ▷ 쓰레기 무단 투기
- ▷ 껌이나 가래침을 아무 곳에나 뱉는 행위
- ▷ 수돗물 장난
- ▷ 실내소란행위, 복도 통행 시 문란 행위, 공중도덕 위반
- ▷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
- ▷ 청소, 주변 활동 등 담당 교사의 지도 불응
- ▷ 면학분위기 저해 행위
- ▷ 수업 준비 미비
- ▷ 위반 행위 적발 시 타인 성명 도용 및 도주

<별점 2점>

- ▷ 월담 및 무단 외출
- ▷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 ▷ 이성간 풍기 문란 행위
- ▷ 흡연 및 담배, 라이터 소지
- ▷ 음주 및 술 소지
- ▷ 학교 기물 파괴 및 채손
- ▷ 도박, 금지된 물품(음란물, 흥기 등)이나 서적 소지
- ▷ 학생 출입 금지 장소 출입 행위
- ▷ 기타 경고로 필요로 하는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

<별점3점>

-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학교내의 봉사 이상 징계 기준]

- ▷ 교사에게 불순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사법기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형벌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무단 결석, 무단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무단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정당한 사유없이 연 10일 이상 무단 결석을 한 학생
- ▷ 정당한 사유없이 연 15일 이상 무단 결석을 한 학생
- ▷ 정당한 사유없이 학기당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
- ▷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 ▷ 흥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별점제는 최근 학교내의 체벌 금지, 교사폭력 금지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대안으로 나타나서 모든 학교에서 유행하였다.

(아마도 교육청의 지시 공문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별점제는 기존의 학생 선도규정을 별점으로 환산하여 그 누적된 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정계,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별점을 일일이 챙겨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그 점수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교사가 매기는 별점을 총괄하고 그것을 규정에 적용하여 처리하는 일이 매우 번잡한 일이어서 그런지 규정들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4) 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학생 지도 규율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규율 제정절차와 개정 절차가 대단히 단선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규율의 적용을 받는 학생과 규율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세 부분에서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규율을 지켜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규율들은 거의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이런 규율은 실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통제 당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둘째, 학교 규율이 학생들의 개성적인 생활과 개별적인 활동 및 자주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용모와 복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또한 지금의 세대는 기성 세대가 청소년기를 살았던 시기와 너무나 다르게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규제하는 규율은 당시의 것과 별반 다름없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아울러 학교 규율은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지나치게 견제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에까지 독재권력의 태도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학교 규율이 조성해내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입시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들의 삶은 그야말로 억압된 생활일 수밖에 없다. 인생에서 가장 발랄하고 창조적이며 개성적이어야 하는 청소년시기가 우리 나라 청소년

의 경우에는 가장 암울하고 물개성적이며 침울한 생활로 뛰어지고 있는 이유를 학교 규율의 비교육적 비민주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 규율 변화의 필요성과 그 대안

1) 학교 교육 변화의 요구

오늘날 학교교육은 현실세계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또한 변화하고 있다. 먼저 현실세계의 변화를 살펴보자.

90년대 들어 세계화의 바람은 우리 나라를 거세게 몰아치고, 이 땅을 휩쓸어 버렸다. 통신 혁명과 정보 기술의 확산은 이제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생산(생산 요소의 범세계적 결합이 핵심인 바, 그것을 위해서는 정보력이 관건이다)의 당위성을 불러왔고, 우리 또한 세계 시장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 1995년 현재 다국적 자본이 세계 총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WTO 체제로 국가의 벽은 허물어지고 있으며, 세계는 개방과 자유 경쟁체제로서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 경제 체제를, 흔히 말하는 세계화 시대를, 국제 금융자본이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IMF'를 통해 뼈저리게 겪었다.

이러한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세계 경제 체제는, 세계사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생존을 위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또 패연화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자.

첫째로,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지식 기반 산업이야말로 국가가 선진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관건 산업이다. 세계 경제 체제는 산업에 있어서의 국제 분업화 체제이기도 하다. 종전에 국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각 산업별 연계가 이제는 국제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산업들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생산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별 분업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후진국은 저

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산업 편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각 나라는 그것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별 삶의 수준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즉,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서 고부가가치 산업은 핵심적으로 지식 산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스티븐 스필버그를 필두로 하는 영화 산업, 정보 통신 산업 등 더 이상 구체적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1990년대 미국 산업의 50% 이상이 지식 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세계 경쟁 체계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지식이 핵심적 생산 요소로 등장하게 되고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되어 가고 있다. 다니엘 벨을 필두로, 토플리, 드러거 등 많은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 사회가 ‘제조업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산업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를 초과하고 있고(90년대 미국의 경우 순수 제조업은 총생산의 13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대량 생산 체계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고, 대규모 설비를 갖춘 공장은 점차 컴퓨터를 통해 제어받는 다양한 생산 공정으로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노동과 자본보다 지력(지식, 기술, 창의력)이 보다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부가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70, 80년대 섬유대국인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몰락 일로에 있지만, 지력을 바탕으로 한 이태리의 베네통,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뎅 등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더욱 활약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신발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부산 신발 산업은 사

양산업이지만, 지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형성한 나이키사(미국 본사 인력은 수 백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됨으로써, 지식 기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80년대까지의 양적 확대 위주의 우리나라 고도 성장이 이제는 벽에 부딪쳤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내외 시장을 겨냥하여 더 이상의 양적 확대는 필요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 제철 산업 등이 재벌들의 중복 투자라는 신문기사의 잣은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소위 'IMF' 이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발전을 도모할 때라는 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식, 기술 개발은 등한시하면서, 외국의 기술을 베껴 사용하고, 핵심 부품은 외국에 의존하던 것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 현실이다(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적 발전은 바로 지식과 기술의 개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바로 지식 기반 경제 체제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세계경제 체제 속에서 지식 기반 경제 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것을 위해서 교육은 지식기반 사회 속에서 살아갈 인력을 육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 이상 60년대가 요구했던, 잡다한 지식⁶⁾과 단순 기능만을 갖

6) 김성재 교수는 현재 학생들이 주입받는 지식의 1%도 10년 후에는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고 언급한다. 김성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국가 발전 전략과 교육개혁(새교육공동체 토론회, 기

춘, 통제에 길들여진 값싼 노동력으로는 세계와 겨눌 수도 없고,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 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교사의 주입식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사고력을 발휘하여 지식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로, 세계를 무대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 신뢰와 공동체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세계 무대에서 상호존중의 교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인간이 창출하는 지식에 대한 신뢰가 가능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지식 창출과 발전에 있어서 지식 기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연계망적 지식과 사회 통합적 지식⁷⁾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정신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경쟁력이 있는 지식은 거의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 창출된다.

이렇게 오늘날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적은 사고력과 창의력, 인간 신뢰와 공동체 정신을 가진 인간상을 육성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규율은 산업화를 위한 값싸고 유능한 노동력 육성이란 교육목적 아래 만들어졌던 규율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 즉 기존의 규율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예측되고 정해진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 ‘통제’를 그 기반으로 했고, 사고력과 창의력 발휘의 기회를 봉쇄했다. 또 인간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공동체 정신을 키우기보다는 학생을 미숙아란 입장(신뢰하는 입장이 아닌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서의 학생이라는 입장에서)에서, 타율적으로 공동체 규율에 적응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학교 규율은 오늘날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학교의 사회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첫째, 사고력과 창의력 육성이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통제’ 위주

조 발제문, 1999. 5. 11.), p. 4.

7) 김성재, 상동 발제문 p. 11-12.

의 학교 규율은 ‘자율’ 위주의 학교 규율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 생활에서 통제를 통한 학생의 로보트화는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학생을 육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삶에서 나오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자율 위주의 규율이 이뤄질 때, 비로소 학교는 학생들의 주체적 삶의 공간이 되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으로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학교의 생활은 학생들이 책임주체의 하나로 등장하여, 사고력·창의력 실현과 함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즐겁고 자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율 위주 규율을 통한 질서라는 것은 교사-학생 관계에서의 거의 수평적인 상호 대화를 통한 규율제정과 시행, 그리고 학생-학생 관계에서의 상호 합의를 통한 규율제정과 시행을 의미하고, 그것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즉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규율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규율을 의미하게된다.

둘째, 학생 ‘선도’ 위주의 학교 규율은 학생 ‘참여’ 위주의 학교 규율로 바뀌어야 한다. 기성세대 입장의 사회질서를 위한 규율에 맞춰 학생을 변화하게끔 인도하는 즉, ‘선도’하는 학교 규율은, 기본적으로 인식론상 학생 존재를 미숙아로 보는 부정적 의식과 학생공동체를 유치하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간주하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성세대인 교사집단이 자기들의 가치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규율을 제정하고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수동적으로 따르기만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규율이 전제로 해야하는 인간신뢰와 공동체 정신은 교사의 주입과 강요에 의해 육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선도 위주의 규율은 이러한 특성들을 육성 할 수 없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자율적인 공동체 형성 및 그 활동을 통해 그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신뢰의 기반 위에 학생들의 자율적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규율은 바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는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학생들이 상호신뢰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기들의 주장이나 활동을 꿔나갈 수 있도록 학교질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학교 질서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에 의한 규율제정과 시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참여는 학생들간의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공동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학교규율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학생집단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사집단이 학생들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그들의 자치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2) 청소년 집단의 변화

세계의 변화와 함께 청소년 집단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신체적·생리적 성장과 사춘기가 무척 빨라졌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건강관리와 충분한 영양 섭취로 신체적·생리적 성숙이 앞당겨져, 많은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2차 성징의 중요한 특징인 초경과 변성이 이루어진다. 또 TV 등 매스컴을 통한 풍부한 간접 경험(연애 등)과 사회의 쾌락 문화 등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미 사춘기로 접어들게 된다.⁸⁾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연예 편지를 쓰고, 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에 많은 경우 10쌍의 커플이 있었고, 5쌍이 헤어졌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에

8) 중앙대의 최윤진 교수는 9-11세에 2차 성징과 사춘기가 시작되고, 10대 중반이면 신체적 성숙과 사춘기가 거의 완료된다고 언급하고,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청소년기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윤진, 청소년 기는 과연 조작되었는가? (21세기 청소년 포럼 10회, 청소년 인권 실태와 권리신장 방안, 1999. 4.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

게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한다. 이러한 성장에 있어서의 조숙성으로 10대 중반이 되면 신체적·생리적으로 거의 성숙이 완료되어 성인의 기능이 가능하고, 심리적으로 자아확립에의 욕구를 가지며, 사회문화적으로도 공동체 속에서의 주체성을 주장하게 된다.⁹⁾

이러한 청소년의 성장 상황을 정리해 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청소년기의 발달 상황

시기 특성	초등학교 고학년 (10~12세)	중학교(13~15세)	고등학교(16~18세)
육체적 특성	2차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	신체의 급성장과 2차 성장의 발달	신체의 지속적 성장과 신체적 기능 완성
정서적 특성	새로운 세계와의 접촉과 변화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사춘기 시작	변화에 따른 정서 불안과 격심한 정서 표출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 가짐.	자아의식의 고양과 낭만적·감상적 경향, 집단 속에서 외로움과 동시에 자아 정체성을 느끼는 경향.
사회· 문화적 특성	또래 집단 형성, 부모와의 갈등 시작	또래 집단의 문화 형성 및 가치관의 혼란, 대중문화에의 몰입 현상 나타남.	자아확립과 공동체에의 욕구로 주체성과 독립을 주장하며, 자기취향에의 몰두 현상 나타남.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10대들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또래 집단을 형성하며,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자기들의 집단을 형성하고, 또한 그 속에서 자아를 확립해가고, 자기 주체성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현실의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획단적으로 알아보자.¹⁰⁾

9) 최윤진, 상동

10)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성 중, 현실만족주의와 개별화의 부분은, 다모초 센고꾸(千石保), 일본의 청소년(청소년 문화,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첫째, 청소년들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변성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을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놀라는 것이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이다. 어떤 여학생들은 한 달에 몇 번씩 머리 스타일을 극에서 극으로 바꾸기도 하고, 머리색을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뛰는 스타일이나 기성세대가 보기에도 이상하다 싶은 스타일까지 개성으로 인정할 줄 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좋아하는 스타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들은 변화가 빠른 소비사회에서 성장했기에 가변성이 뛰어나다. 즉 사고에 있어서 유연하다. 따라서 이들은 고착되고 딱딱한 기성세대의 사고에 답답함을 느낀다. 더욱이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들은 기성세대와 거리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가급적 기성세대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사와의 대화 단절 현상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자기들의 사회적·문화적 삶을 만들어 나가고, 개인적으로도 또래집단에서 사고와 행위의 준거를 찾게 되고, 그 곳에서 자기의 사고와 행위의 틀을 만들어 가게 된다.

둘째, 그들은 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성시해 온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과는 달리, 동양에서는 자기가 속한 작은 공동체 속의 합일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일본의 경우, 뚜렷한 자기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공동체적 분위기에 자기를 맞추어 나가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동체적 동일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따른 사고의 폐쇄성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독특한 개성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보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줄 의식이나 지연, 혈연 등으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p.27-34에서 내용을 차용한 것도 있고 시사받은 바도 크다.

뿌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족을 중시하며 사회에 임한다.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직장에 근무하고자 희망하며, 자기와 취향이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 대부분이, 사회에의 기여나 평생직장을 위해 직업선택을 하기보다는 수입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친구도 이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협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퇴색해 버렸다. 그들은 가슴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보다는 '재미있는' 친구를 선호한다. 그들은 각자의 프라이버시 영역을 존중하며, 가볍게 즐겁게 사귈 수 있는 친구를 원하는 것이다. 어떤 청소년이 함께 운동을 하고 춤추고 패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친구를 다양하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각각 개별화된 욕구를 같이 나눌 부분적인 파트너에 불과한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는 친구사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억압적인 세계라고 느끼는 것이다.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풍요한 소비 사회의 산물인 그들은 개인 욕구를 가장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욕구나 개성을 인정하는 개방성과 그것을 조정하는 근대적인 합리성의 성향을 갖는 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바탕 위에서, 10대 청소년들은 그 조숙성으로 인해 10대 중반이면 이미 문화적 주체성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중고생들은 신체적 성숙과 매스컴을 통한 풍부한 간접경험과 컴퓨터를 비롯한 멀티미디어 매체 등 충분한 문화실현의 수단을 통해 자기의 특정한 관심 분야에 몰입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컴퓨터나 가요, 춤, 영화 등 연예 분야에서 그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컴퓨터를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의 경우만 예를 들어도 서울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학생들이

10여명 이상씩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추산이다.

셋째로, 청소년들은 현실만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그것을 주로 감각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현재의 만족과 소비가 주된 관심사이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하라는 어른들의 얘기를 공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현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힘든 노력을 회피한다. 즉 현재를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고 현재를 즐기는 것을 가장 중시한다. 그들은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춤에 빠지며, 장래 희망을 빼댄서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대부분 3D 업종 같은 고된 일은 보람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자기의 장래희망이 그것이길 바라지는 않는다. 즉 감각적 측면에서의 현실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래희망도 디자이너, 연예인, 코디네이터, 요리사... 같은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며, 스스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프리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감각적 현실만족주의는 요즘 음식문화, 연예인 문화를 확산시키고, 신세대적 연애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 토크쇼 등 TV의 제반 프로그램, 패션 브랜드 블로그 유형의 급속한 변천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즘 청소년들은 보다 유연한 삶의 양식을 가진, 그들끼리의 또래 집단 형성을 통한 자아확립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바탕 위에서 문화적 주체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로 감각적인 측면에서의 현실만족주의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의 특성에 의해 정리해 보면 ‘유연한 또래집단’, ‘개인주의적 문화 주체성 주장’, ‘현실에서의 감각 실현’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규율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소년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유연성과 또래집단의 가치관을 기성세대 입장에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낡고 고착된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가 자기들 가치관에 입각하여

규율을 만들어, ‘선도’라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기성세대가 잘 쓰는 ‘선도’라는 말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의 옳음과 청소년의 미성숙을 전제로 해서 나온 말이다. 그 말이 아직도 폐지되어야 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들 또래집단의 공동체적인 요구와 시대변화에 따른 유연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집단의 ‘참여’로 규율은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개인주의적 입장이 바탕이 된 문화적 주체성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동안 학교 규율은 청소년들을 미숙아라는 전제 아래, 잘 보호하고 규제하여 기성세대처럼 사회화하는 도구였다. 따라서 학교규율은 공동체적 가치 수호와 개인 ‘보호’(‘보호’ 개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기를 미래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아, 미숙아로 보아, 그 주체성과 책임성을 중시하지 않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를 내세우며, 학생들의 주체성에 입각한 ‘자율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개인주의적 문화적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개인의 권리와 거기에 따른 ‘자율’을 인정하는 규율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규율에 있어서도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그들의 자율적 합의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기성세대에 비해 그들이 감각적으로 발전해 있으므로, 개인의 감각실현이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교사도 인정하고, 규율내용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학교 규율의 변화와 그 대안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학교의 교육목적과 청소년 집단의 변화에 따른 학교 규율은 근본적인 방향에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규율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학생집단의 권리와 주체성을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그것은 법에 있어서, 군주의 일방적 제정과 시행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합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제정과 시행

으로 발달해 가는 세계사의 발전 흐름과 일치한다.¹¹⁾ 한편,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권리나 역할을 주어 정책 결정에 참여를 시켜야, 그들이 책임감을 갖고 성장하여 미래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교육적인 입장의 당위론도 학교 규율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의 학생집단의 역할 제고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규율은 변화된 학교의 교육목적과 청소년 집단의 성격에 부응하여, 기본적으로 기존의 ‘통제’ 위주에서 ‘자율’ 위주로, ‘선도’ 위주에서 학생 ‘참여’ 위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집단의 감각적 측면에서의 발전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성세대인 교사집단의 가치관만을 반영한 학교질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나름의 인생관을 갖고 주체성 실현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나 모른 체 할 수는 없다. 변화는 빠를 수록 좋을 것이다. 새로운 학교 규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규율의 목적에 있어서 학교질서 유지보다는 교사·학생 공동체 질서 유지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규율에서는 중앙에서 결정한 학교 교육의 목적에 따라 학교장-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위계 질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통제되는 ‘학교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면, 새로운 규율은 학생집단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교장, 교사집단 등 모든 구성원이 상호신뢰와 협조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규율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규율의 내용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과 개성의 실현, 그리고 학생 공동체의 활동이 보장되는 내용이 주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율과 참여를 그 기본적 방향으로 정하는 데 있어 학생의 권리 신장이 그 전제조건으로 철학적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 학교 구성원들

11)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이 글 전반적으로 이봉철, 청소년권 논의의 오늘 (청소년학대회, 서울 청소년 학회, 1991), pp. 80-86 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

의 공동체 형성과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생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이므로 이것 또한 그 전제조건 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동하지 못한다면 학교 사회에서 주체성 확보도 어렵고, 발언권을 갖기도 힘들기에, 자율과 참여는 공허한 논리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공동체 활동 관련 규율의 예를 들자면, 친구 사이의 규율, 남녀 혼합반에서의 남녀관계, 선후배 관계, 학급생활, 동아리, 학생회 활동에서의 규율 등 많이 있을 것이다.

셋째, 규율제정에 있어서의 학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규율일 때, 학생들은 그것을 내면화하고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자기들의 현실에 맞춰 개정 운동도 할 수 있어, 학교 생활을 변화시키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율개정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율개정을 앞두고 학급토론, 교사와 학생간의 공개 토론회, 공청회, 교사-학생 공동 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학생회를 통한 학생 활동과 학급토론일 것이다. 그리고 일차 제정된 것을 각 학급토의에 부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규율집행에 있어서 학생 참여를 비롯하여 그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규율집행은 거의 선도부에서 전적으로 담당했다. 그것은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학생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많은 교사들의 참여나 학생들의 능동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지극히 취약했다. 규율집행 방법을 다양화하여 전체 교사의 참여와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의결 기능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선도위원회와 직원회의, 학년담임회의, 그리고 학생측의 학생총회와 대의원회의, 학급회의(학급재판 같은 것은 10년 전에 이미 시도되어 성과를 올린 적이 있다¹²⁾)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와 그에 따른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 또

집행 위계상에 있는 교장, 학생부, 학년부, 담임, 그리고 학생회장, 학생회 운영위원회, 선도부, 학급운영위원회, 동아리회의 등으로 학교 규율 시행과 처벌에 관한 권한이 사안에 따라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2) 이상석,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III. 조사 도구 및 방법

현재 중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교 규율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인식과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본 조사는 1999년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서울지역과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배포한 1,20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801부로 66.8퍼센트의 회수율을 보였다.

총 801명의 조사 대상 가운데 중학생은 219명, 고등학생 300명으로 학생은 총 51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4.8퍼센트이며, 교사는 144명으로 18퍼센트, 학부모 17.2퍼센트이다.

<표 III-1> 조사 대상 분포

단위 : 명(%)

집단구분 학교급별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중학교	45(15.8)	21(7.4)	219(76.8)	285(100.0)
고등학교	99(19.2)	117(22.7)	300(58.1)	516(100.0)
계	144(18.0)	138(17.2)	519(64.8)	801(100.0)

학교 규율에 대한 인지도, 학교규정 제정 절차, 바람직한 학교규율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 현재 학교에서의 규제 상태 및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SPSSWi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1. 학교 규율에 대한 인지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정되어 있는 학생선도규정, 체벌규정, 복장규정 등 제 규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7퍼센트가 학생부가 규제하는 것으로 미루어 어렵잖이 알고 있는 정도라고 응답했으며,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9.5퍼센트로 전체의 70.2퍼센트가 학교규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학교규정 인지도에 대한 집단별 반응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학부모나 학생집단에 비해 학교규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비율이 44.4퍼센트로 학부모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26.5퍼센트, 학생 26.6퍼센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가 2.8퍼센트에 그친 반면 학부모 집단은 35.5퍼센트, 학생들은 59.2퍼센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학교규정에 대해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학교규정 인지도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단위 : 명(%)

집단구분 인지도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잘 알고 있음	64(44.4)	36(26.5)	138(26.6)	238(29.8)
어렵잖이 알고 있음	76(52.8)	73(53.7)	335(64.7)	484(60.7)
잘 모름	4 (2.8)	27(19.9)	45(8.7)	76(9.5)
계	144(100.0)	136(100.0)	518(100.0)	798(100.0)

$$\chi^2=39.034 \quad P=0.00$$

2. 학교규정 제정 절차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의 제 규정은 어떤 절차로 제정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3퍼센트가 어떤 절차로 학교의 제 규정들이 제정되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이 학교규정 제정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학교규정 제정절차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머지 응답자의 분포를 볼 때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학생부가 기획하고 학교장이 결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제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6퍼센트이다. 반면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하면 교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정한다가 19.9퍼센트이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다는 10.2퍼센트가

<표 IV-2> 학교규정 제정 절차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단위 : 명(%)

집단구분 제정절차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총학생회 제출후 교무회 의에서 심의한 후 학운 위에서 결정	4(2.9)	9(6.9)	95(18.7)	108(13.9)
학생부 초안 작성 뒤 학 운위 심의거쳐 제정	37(26.6)	21(16.2)	21(4.1)	79(10.2)
학생부 기획, 학교장 결재후 학운위 심의거쳐 제정	48(34.5)	16(12.3)	104(20.5)	168(21.6)
잘 모름	50(36.0)	84(64.6)	288(56.7)	422(54.3)
계	139(100.0)	130(100.0)	508(100.0)	777(100.0)

$$\chi^2=112.820 \quad P=0.00$$

반응하였다.

이러한 반응분포를 볼 때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정을 제정하는 학교도 있으나 아무런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학생부가 기획하여 학교장이 결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형식적 심의를 거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20퍼센트 정도여서 학교 구성주체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에 의해 학교규율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교사는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많으나 일부는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 다수의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 규정과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규정 사이에 거리가 너무 있어 학생들이 규정의 제·개정을 원해도 교사들에 의해 제·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잘 수렴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사들에 의해서만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호소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3. 바람직한 학교 규율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

학교 규율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4퍼센트가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총학생회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5.6퍼센트가 ‘교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볼 때 전체 응답자의 93퍼센트가 학생이나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학생회나 또는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

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교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으면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1퍼센트에 그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각 집단별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경우 79.6퍼센트가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14.1퍼센트가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총학생회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4퍼센트,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총학생회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5.1퍼센트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표 IV-3> 바람직한 학교규정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단위 : 명(%)

집단구분 바람직한 규정 절차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총학생회가 초안을 작성, 학운위가 심의 의결	20(14.1)	60(45.1)	289(57.3)	369(47.4)
학생부 초안 작성 뒤 학운위 심의 의결	113(79.6)	67(50.4)	175(34.7)	355(45.6)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교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9(6.3)	6(4.5)	40(7.9)	55(7.1)
계	142(100.0)	133(100.0)	504(100.0)	779(100.0)

$$\chi^2=95.537 \quad P=0.00$$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57.3퍼센트가 ‘총학생회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34.7퍼센트가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부가 초안을 만드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끊는 반면 학생들은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총학생회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여 집단간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개정 절차에 대한 기타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극소수의 의견으로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자질과 사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학부모의 경우 교육부에서 제정하는 규율대로 하자는 의견과 고등학생의 경우 최소의 규율만 제정하자는 경우와 중학생의 경우 학생들이 만들고 학생이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 현재 학교에서의 규제 상태

현재 학교에서 실제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첫째, 옷, 신발, 두발 등 복장에 관한 규율, 둘째,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품행에 관한 규율, 셋째, 학교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율, 넷째, 학생의 근태에 관한 규율, 다섯째, 음주, 흡연, 약물복용에 관한 규율, 여섯째, 풍기문란에 관한 규율, 일곱째, 금품 절취에 관한 규율, 여덟째, 폭력행위에 관한 규율, 아홉째, 학생자치활동 및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과연 그러한 학교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 자치규율로 두는 것이 좋은가, 아예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1) 옷, 신발, 두발 등 복장에 관한 규율

옷, 신발, 두발 등 복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대상 항목에 대한 응답은 이 규정을 어겼을 때, 혼내거나 징계당한다는 비율이 높은 항목과 어기더라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복장과 관련해 ‘학교의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어기더라도 별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혼내거나 징계한다’는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후면에 외래어가 표기된 겉옷에 대해 입을 수 없다’, ‘속옷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화려한 티셔츠를 속옷으로 입는 것을 금한다’ 등이다. 즉 ‘전후면에 외래어가 표기된 겉옷에 대해 입더라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8퍼센트, ‘속옷은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가 51.5퍼센트, ‘화려한 티셔츠를 속옷으로 입어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3.2퍼센트였다.

다음으로 학교 규정을 어겼을 경우, 혼내거나 징계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비등하게 나타난 항목들로는 ‘교내·외의 학습장과 외출 시에 교복을 상용해야 한다’(‘징계한다’ 50.1퍼센트, ‘간섭하지 않는다’ 49.9퍼센트), ‘학생 외투가 아닌 잡바류의 겉옷을 입을 수 없다’(‘징계한다’ 51.4퍼센트, ‘간섭하지 않는다’ 48.6퍼센트), ‘학생용 등에 매는 가방만을 허용하며, 혐오감을 주는 외래어 표기나 그림이 있는 가방, 서류 가방, 샌들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징계한다’ 51.0퍼센트, ‘간섭하지 않는다’ 49.0퍼센트), ‘양말은 검은 색, 흰색으로 허용하고, 성인용 스타킹이나 강한 원색의 양말은 금한다’(‘징계한다’ 56.1퍼센트, ‘간섭하지 않는다’ 43.9퍼센트) 등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볼 때, ‘학교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나 어기더라도 간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항목들과 ‘징계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항목들에 속하는 규정들은 명목

상 학교규정으로 되어 있는 셈이어서 이러한 규정은 철폐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섭하지 않는다’는 반응에 비해 ‘혼내거나 징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들에 속하는 규정들로는 ‘허가 없이 교내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었을 경우 징계한다’가 80.3퍼센트, ‘외투는 학생용만 허용하며, 색상이 화려한 일반 외투를 입었을 경우 징계한다’가 73.8퍼센트, ‘화장을 할 경우 징계한다’가 80.3퍼센트, ‘손·발톱에 매니큐어를 발랐을 경우 징계한다’가 80.4퍼센트, ‘정해진 귀밑 5센티, 앞머리 3센티 등 정해진 두발 길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한다’가 70.5퍼센트,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단발 및 커트 머리로 정해진 형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한다’가 62.0퍼센트, ‘무스나 스프레이를 사용했을 경우 징계한다’가 73.4퍼센트, ‘염색이나 파마 등을 했을 경우 징계한다’가 89.6퍼센트, ‘굽이 높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발목 위까지 길이가 긴 신발, 샌들 등을 신었을 경우 징계한다’가 75.5퍼센트, ‘머리에 화려한 장식이나 머리핀을 꽂았을 경우 징계한다’가 74.3퍼센트, ‘팔지, 귀걸이, 반지 등을 착용했을 경우 징계한다’가 79.0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은 교복을 상용해야 하며, 사복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두발은 정해진 길이와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신발 또한 단정한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만이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의 경우, 화장은 금지되며, 화려한 장식은 피해야 하고, 팔지,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도 착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옷, 신발, 두발 등 복장에 대한 전체 응답자들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규율로 두면 좋겠다’, ‘간섭할 필요없다’의 세가지 반응 가운데,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들로는 ‘사복 착용’(45.2퍼센트), ‘화장’(46.7퍼센트), ‘염색 및 파마’(47.7퍼센트) 등이다. 이러한 항목은 실제 학교에서 규

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항목들과 일치하고 있다.

'징계하기 보다는 학생 자율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항목들에는 '교복 변형'(45.2퍼센트), '화려한 색상의 외투 착용'(45.8퍼센트), '매니큐어 칠'(42.4퍼센트), '무스나 스프레이 사용'(46.5퍼센트), '팔지, 귀걸이, 반지 등 장신구 착용'(39.2퍼센트) 등이다. 이는 교복은 착용하되 외투는 학생자치 규율로 정하고, 염색이나 파마는 금지하되 두발용 화장품의 사용 및 장신구 착용에 대해서는 징계하기 보다 학생자치 규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반응 가운데 아예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외래어가 표기된 겉옷 착용 금지'(53.4퍼센트), '잠바류 착용 금지'(46.4퍼센트), '속옷 미착용 금지'(42.9퍼센트), '화려한 티셔츠 착용 금지'(40.9퍼센트), '두발 길이 제한'(47.0퍼센트), '두발 형태 제한'(47.5퍼센트), '외래어나 그림이 있는 가방이나 서류 가방, 자루 가방 금지'(43.6퍼센트), '원색의 양말 착용 금지'(42.3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로운 겉옷과 양말을 착용하게 하고, 두발의 길이나 형태를 제한하지 않으며, 가방의 형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실제 학교에서는 규율을 어겼을 경우 혼내거나 징계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학생자치 규율로 두거나 아예 간섭할 필요조차 없다고 응답한 항목도 많아 학교에서의 규정이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들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품행에 관한 규율

다음의 표에서 보여지듯,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품행에 대한 규율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들의 반응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혼내거나 징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업

과 관련된 학생들의 품행에 관한 문항 중에서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징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2.7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 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징계한다’가 87.8퍼센트, 그 다음이 ‘상습적으로 수업기간에 군것질을 하거나 만화책 등 다른 책을 보는 경우 징계한다’가 87.1퍼센트, ‘개인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경우 징계한다’가 86.2퍼센트, ‘상습적으로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는 경우 징계한다’가 82.4퍼센트, ‘휴대폰, 호출기 등으로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징계한다’가 80.8퍼센트,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 징계한다’가 73.6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들의 판단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품행에 관한 모든 문항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자치 규율을 두면 되거나(30.6퍼센트-20.5퍼센트에서 분포), 간섭할 필요가 없다’(19.9퍼센트-5.3퍼센트)고 응답한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업준비의 소홀을 비롯, 수업 중 잡담, 다른 짓을 하는 행위, 잠자는 행위는 물론 수업 중 교사의 지시거부, 개인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경우 모두에 대해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수업부분과 관련한 실제 학교의 규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옷, 신발, 두발 등 복장에 관한 규율 상태 및 응답자들의 판단

단위 : 명 (%)

일련 번호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흔해거나 정계한다	간섭하지 않는다	정개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1	학생은 교내 외의 학습장과 외출 시에 교복을 상용하여야 한다.	381 (50.1)	379 (49.9)	126 (16.2)	327 (42.1)	323 (41.6)
2	여가 없이 교내에서 교복은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없다.	629 (80.3)	154 (19.7)	357 (45.2)	306 (38.8)	126 (16.0)
3	교복의 폭이나 길이를 줄이는 등 학교교복의 원래 형태를 일의로 변형할 수 없다.	602 (77.2)	178 (22.8)	245 (31.2)	355 (45.2)	186 (23.7)
4	외투는 학생용만 허용하며 색상이 화려한 일반외투를 입을 수 없다.	577 (73.8)	205 (26.2)	170 (21.7)	359 (45.8)	254 (35.4)
5	전 후면에 외래어가 표기된 걸옷은 입을 수 없다.	263 (34.2)	505 (65.8)	92 (11.8)	270 (34.7)	415 (53.4)
6	학생외투가 아닌 잡바류의 걸옷은 입을 수 없다.	394 (51.4)	372 (48.6)	82 (10.6)	331 (42.9)	358 (46.4)
7	속옷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76 (48.5)	400 (51.5)	153 (19.3)	299 (37.8)	339 (42.9)
8	화려한 티셔츠를 속옷으로 입는 것을 금한다.	360 (46.8)	409 (53.2)	152 (19.4)	312 (39.7)	321 (40.9)
9	학생은 얼굴에 화장을 할 수 없다.	621 (80.3)	152 (19.7)	366 (46.7)	298 (38.1)	197 (15.2)
10	손·발톱에 일체 매니큐어를 바꿀 수 없다.	626 (80.4)	153 (19.6)	322 (40.9)	344 (42.4)	131 (16.6)
11	두발은 정해진 길이를 지켜야 한다.(귀밑 5센티, 앞머리 3센티 등)	550 (70.5)	230 (29.5)	114 (14.4)	306 (38.6)	372 (47.0)
12	두발의 형태는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단발 및 커트머리로 정해진 형태를 지켜야 한다.	483 (62.0)	296 (38.0)	100 (12.6)	318 (39.9)	378 (47.5)
13	무스, 스프레이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571 (73.4)	207 (26.6)	174 (21.9)	369 (46.5)	250 (31.5)
14	염색, 파마 등을 할 수 없다.	697 (89.6)	81 (10.4)	370 (47.7)	253 (35.7)	139 (17.6)
15	신발은 단정한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를 허용한다. 굽이 높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발목 위까지 길이가 긴 신발, 샌들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590 (75.5)	191 (24.5)	231 (29.0)	370 (39.8)	248 (31.2)
16	가방은 학생용 등에 매는 학생용 가방만 허용하며, 혈오감을 주는 외래어 표기나 그림이 있는 가방, 서류가방, 자루가방 등은 금한다.	397 (51.0)	381 (49.0)	142 (17.9)	306 (38.5)	347 (43.6)
17	여학생 머리핀이나 머리끈은 검은색, 갈색, 감색 등만 허용하고, 화려한 장식이나 머리핀 등을 금한다.	579 (74.3)	200 (25.7)	122 (15.4)	323 (40.7)	349 (44.0)
18	일체의 팔지, 귀걸이, 반지 등을 착용할 수 없다.	613 (79.0)	163 (21.0)	234 (29.7)	309 (39.2)	246 (31.2)
19	양말은 검은색, 흰색으로 허용하고, 성인용 스타킹이나 강한 원색의 양말은 금한다.	437 (56.1)	342 (43.9)	148 (18.6)	311 (39.1)	336 (42.3)

<표 IV-5>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품행에 관한 규율 상태 및 응답자들의 판단

단위 : 명(%)

일련 번호	규 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흔내거나 징 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1	상습적으로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는 경우	646(82.4)	183(17.6)	500(63.0)	243(30.6)
2	수업 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688(87.8)	96(12.2)	535(67.6)	206(26.0)
3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	574(73.6)	206(26.4)	339(43.0)	293(37.1)
4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군것질을 하거나 만화책 등 다른 책을 보는 경우	680(87.1)	101(12.9)	497(62.5)	227(28.6)
5	휴대폰, 휴지기 등으로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628(80.8)	149(19.2)	486(61.1)	235(29.5)
6	수업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722(92.7)	57(7.3)	590(74.2)	163(20.5)
7	개인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경우	671(86.2)	107(13.8)	502(63.2)	184(23.2)
					106(13.6)

3) 학교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율

학교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율부분에 있어서는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98.7퍼센트가 혼내거나 징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교사에게 욕설을 한 경우 96.9퍼센트, 시험문제지를 사전 입수하여 문제를 누설한 경우 혼내거나 징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6.9퍼센트로 같게 나타났다.

또한 시험문제를 절취한 경우 95.8퍼센트, 고사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95.5퍼센트,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행위를 한 경우 같은 95.5퍼센트의 비율을 나타냈다. 성적표, 출석부, 학급일지 등 제반 공문서를 변조 파손하거나 제 증명을 위조한 경우 92.3퍼센트였다.

이 외에 '학교 출입시 담을 넘는 월장행위를 한 경우 혼내거나 징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퍼센트, 공납금을 유용한 경우 83.8퍼센트, 침

뱉기, 쓰레기 투기, 소란 등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 75.3퍼센트, 체육대회, 소풍 등 학교 단체 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74.0퍼센트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분포를 볼 때,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욕설 및 불손한 반향을 한 경우 96퍼센트 이상이 징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험 문제 절취 및 사전 입수하거나 고사 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95퍼센트 이상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학교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판단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해야 한다'는 비율이

<표 IV-6> 학교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율 상태 및 응답자들의 판단

단위 : 명(%)

일련 번호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흔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1	침 뱉기, 쓰레기 투기, 소란 등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	591(75.3)	194(24.7)	465(58.7)	279(35.2)
2	학교 출입시 월장(담을 넘어가는 것)한 경우	688(88.0)	94(12.0)	464(58.7)	241(30.5)
3	체육대회, 소풍 등 학교 단체 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576(74.0)	202(26.0)	372(47.0)	307(38.8)
4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경우	747(95.8)	33(4.2)	704(88.9)	63(8.0)
5	시험 문제지를 사전 입수하여 문제를 누설한 경우	754(96.9)	24(3.1)	117(90.3)	56(7.1)
6	고사 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749(95.5)	35(4.5)	683(85.9)	95(11.9)
7	공납금을 유용한 경우	652(83.8)	126(16.2)	553(69.7)	184(23.2)
8	성적표, 출석부 학급일지 등 제반 공문서를 변조·파손하거나 제증명을 위조한 경우	721(92.3)	60(7.7)	651(81.7)	126(15.8)
9	교사에게 불손한 반향을 한 경우	750(95.5)	35(4.5)	608(76.3)	155(19.4)
10	교사에게 욕설을 한 경우	760(96.9)	24(3.1)	674(84.7)	96(12.1)
11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772(98.7)	10(1.3)	716(89.9)	64(8.0)
					16(2.0)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학교에서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에 응답자들 대부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생의 근태에 관한 규율

학생의 근태에 관한 실제 규제에 있어서는 ‘상습적으로 무단 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징계한다’가 93.3퍼센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석을 한 경우 92.7퍼센트, 무단 결석 및 단순 가출 등으로 출결이 무상한 경우 90.9퍼센트가 혼내거나 징계한다고 응답하였다.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를 3회 이상 한 경우 85.2퍼센트, 주변 근무, 청소 당번을 태만히 한 경우 응답자의 73.7퍼센트가 학교에서 징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학생의 근태에 관한 부분이 철저히 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7> 학생의 근태에 관한 규율 상태 및 응답자들의 판단

단위 : 명(%)

일련 번호	규 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 를 3회 이상 한 경우	667(85.2)	116(14.8)	488(61.2)	254(31.9)	55(6.9)
2	무단 결석 및 단순 가출 등으로 출결이 무상한 경우	712(90.9)	71(9.1)	587(73.8)	160(20.1)	48(6.0)
3	상습적으로 무단 가출하여 물의 를 야기한 경우	729(93.3)	52(6.7)	635(79.7)	123(15.4)	39(4.9)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 석을 한 경우	725(92.7)	57(7.3)	626(78.4)	137(17.2)	35(4.4)
5	주변 근무, 청소당번 등을 태만 히 한 경우	577(73.7)	206(26.3)	368(46.1)	364(45.6)	66(8.3)

그러나 학생의 근태에 관한 규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의 판단을 살펴보면 무단 가출 및 결석, 지각, 조퇴 등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변 근무, 청소 당번 등을 태만히 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가 46.1퍼센트였음에 반해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6퍼센트, '간섭할 필요가 없다'가 8.3퍼센트로 징계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음주, 흡연, 약물 복용에 관한 규율

음주, 흡연, 약물복용에 관한 규제 상태를 살펴보면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경우 징계한다'가 99.1퍼센트, 다른 학생에게 환각제나 마약류를 강권하거나 공급한 경우 98.7퍼센트로 나타나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약물 복용이나 강권하는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반응한 사람들이 90퍼센트 이상을 넘고 있어, 응답자들도 약물복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집단으로 흡연 또는 음주가 신고된 경우 97.3퍼센트, 공공연히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96.0퍼센트, 술, 담배 등을 소지한 경우 94.5퍼센트, 은폐된 장소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93.9퍼센트, 다른 학생에게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한 경우 92.0퍼센트로 나타나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에 대해 응답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징계한다고 응답하였다.

음주, 흡연, 약물 복용에 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학생자치 규율로 두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음주, 흡연,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행 학교에서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음주, 흡연 약물 복용에 관한 규율 상태 및 응답자들의 판단

단위 : 명(%)

인원 번호	규 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은 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흔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규 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온폐된 장소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736(93.9)	48(6.1)	608(76.2)	147(18.4)	43(5.4)
2	술, 담배 등을 소지한 경우	741(94.5)	43(5.5)	599(75.0)	150(18.8)	50(6.3)
3	공공연히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752(96.0)	31(4.0)	638(79.9)	123(15.4)	37(4.6)
4	다른 학생에게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한 경우	717(92.0)	62(8.0)	664(83.5)	102(12.8)	29(3.6)
5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으로 흡연 또는 음주하여 주민으로부터 신고된 경우	759(97.3)	21(2.7)	682(85.4)	89(11.1)	28(3.5)
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경우	770(99.1)	7(0.9)	756(94.6)	30(3.8)	13(1.6)
7	다른 학생에게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강권하거나 공급한 경우	767(98.7)	10(1.3)	766(95.8)	25(3.1)	9(1.1)

6) 풍기 문란에 관한 규율

풍기 문란으로 분류되는 항목별 규제 상태를 살펴보면,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경우 95.6퍼센트, 부녀자를 폭행하거나 회통한 경우 94.8퍼센트가 징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징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성인전용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에는 90.6퍼센트, 교내에서 이성의 교사에게 성적인 야유를 한 경우 89.5퍼센트,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87.6퍼센트, 음란서적, 외설 및 폭력 만화, 음란 비디오나 CD를 소지한 경우 83.4퍼센트, 교내에서 이성의 학우에게 성적인 야유를 한 경우 81.8퍼센트가 징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징계하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음란서적 등을 윤독하게 한 경우(79.4퍼센트), 비디오 방, 인터넷

<표 IV-9> 풍기문란에 관한 규율 상태 및 응답자들의 판단

단위 : 명(%)

일련 번호	규 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규 율로 두면된다	
1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행위를 한 경우	255(33.1)	515(66.9)	106(13.3)	280(35.2)	409(51.4)
2	교내에서 이성과 껴안는 행위를 한 경우	459(60.2)	303(39.8)	276(34.8)	274(34.6)	233(30.6)
3	음란서적, 외선 및 폭력 만화, 음반 비디오나 CD를 소지한 경우	642(83.4)	128(16.6)	453(57.0)	254(31.9)	88(11.1)
4	비디오방, 인터넷 게임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539(70.5)	226(29.5)	385(48.5)	270(34.0)	138(17.4)
5	다른 학생들에게 음란서적 등을 윤독하게 한 경우	608(79.4)	158(20.6)	493(62.1)	219(27.6)	82(10.3)
6	성인전용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	698(90.6)	72(9.4)	605(76.2)	138(17.4)	51(6.4)
7	불친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71(87.6)	95(12.4)	575(72.4)	157(19.8)	62(7.8)
8	교내에서 이성의 학우에게 성적인 애유를 한 경우	626(81.8)	139(18.2)	588(74.4)	159(20.1)	43(5.4)
9	교내에서 이성의 교사에게 성적인 애유를 한 경우	688(89.5)	81(10.5)	668(84.0)	96(12.1)	31(3.9)
10	부녀자를 폭행하거나 회종한 경우	727(94.8)	40(5.2)	739(92.7)	41(5.1)	17(2.1)
11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경우	732(95.6)	34(4.4)	748(94.0)	31(3.9)	17(2.1)

게임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경우(70.5퍼센트)였다.

이외에 교내에서 이성과 껴안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2퍼센트,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행위에 대해서는 33.1퍼센트가 혼내거나 징계한다고 응답하였으나 66.9퍼센트는 징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여 풍기 문란과 관련한 문항 가운데 징계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유일한 항목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조사 대상 학교 중 이성의 손을 잡는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학교보다 징계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들의 판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3.3퍼센트에 그친 반면 학생자치 규율로 하면 된다가 35.2퍼센트였으며, 아예 간섭할 필요조차 없다고 반응한 사람은 51.4퍼센트로 이성의 손을 잡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풀어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내에서 이성과 껴안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34.8퍼센트인데 반해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가 34.6퍼센트, 간섭할 필요 없다가 30.6퍼센트로 나타나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성과 손을 잡거나 껴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 없이 학생자치 규율로 만들거나 아예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7) 금품절취에 관한 규율

금품절취에 관한 규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4퍼센트가 절취사건으로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경우 학교에서 징계한다고 응답했으며, 조직적인 금품 절취에 가담한 경우와 상습적인 도박이나 금품을 목적으로 한 사행행위시 처벌한다가 같은 93.9퍼센트, 타인의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하거나 강탈한 경우 91.1퍼센트, 교내의 물품이나 기자재를 은닉하여 반출한 경우 83.9퍼센트를 차지했다.

반면 상점에 외상값을 안 갚아 물의를 빚은 경우 62.4퍼센트,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신발이나 체육복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 59.9퍼센트, 상습적으로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경우 58.8퍼센트,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학용품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징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퍼센트를 차지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교내 물품을 은닉하여 반출한 경우에 비해 외상값을 안 갚거나 다른 학생들의 신발이나 학용품을 사용한 경우 처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0> 금품절취에 관한 규율 상태 및 응답자들의 판단

단위 : 명(%)

일련 번호	규 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은 어겼을 경우				
		흔네거나 징계 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학용품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455(58.3)	325(41.7)	468(58.9)	267(33.6)	60(7.5)
2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신발이나 체육복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	466(59.9)	312(40.1)	513(64.4)	229(28.8)	54(6.8)
3	상점에 외상값을 갚지 않아 물의를 야기한 경우	482(62.4)	290(37.6)	478(60.4)	233(29.4)	81(10.2)
4	상습적으로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경우	453(58.8)	318(41.2)	507(64.1)	224(28.3)	60(7.6)
5	교내의 물품이나 기자재를 은닉하여 반출한 경우	651(83.9)	125(16.1)	636(80.4)	131(16.6)	24(3.0)
6	타인의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하거나 강탈한 경우	703(91.1)	69(8.9)	719(90.4)	63(7.9)	13(1.6)
7	조직적인 금품 절취에 가담한 경우	725(93.9)	47(6.1)	739(93.1)	41(5.2)	14(1.8)
8	절취 사건으로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경우	726(94.4)	43(5.6)	723(91.3)	54(6.8)	15(1.9)
9	상습적인 도박이나 금품을 목적으로 한 사행행위를 한 경우	722(93.9)	47(6.1)	720(90.7)	51(6.4)	23(2.9)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들의 판단을 묻는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금품을 절취했거나 이를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한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상습적으로 돈을 꾸고 갚지 않거나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경우, 다른 학생들의 신발이나 체육복 및 학용품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정도가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 분포를 보였다.

8) 폭력행위에 관한 규율

폭력행위에 관한 규율을 어겼을 경우, 실제 학교에서 징계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칼이나 둔기로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로 98.6퍼센트가 반응하였다. 다음으로 외부의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96.6퍼센트, 폭력조직을 결성하는데 주동했거나 가담한 경우 95.7퍼센트, 학교 건물에 고의로 방화한 경우 95.2퍼센트, 집단폭행에 가담한 경우 95.1퍼센트, 이유없이 하급생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한 경우 91.8퍼센트,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징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퍼센트를 넘은 문항들이다.

<표 IV-11> 폭력행위에 관한 규율 상태 및 응답자들의 판단

단위 : 명(%)

일련 번호	규 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은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정개하지 않는다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칼이나 둔기를 소지한 경우	629(81.3)	145(18.7)	592(75.2)	148(18.8)	47(6.0)
2	상습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통신에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경우	453(58.8)	317(41.2)	421(53.5)	245(31.0)	124(15.7)
3	혼자서 타인을 구타한 경우	679(48.0)	93(12.0)	598(75.9)	146(18.5)	44(5.6)
4	친구를 개인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힌 경우	589(76.4)	182(23.6)	590(74.9)	168(21.3)	30(3.8)
5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경우	732(95.1)	38(4.9)	705(88.9)	67(8.4)	21(2.6)
6	이유 없이 하급생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한 경우	705(91.8)	63(8.2)	709(89.6)	65(8.2)	17(2.1)
7	집단적, 지속적으로 친구를 따돌려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경우	655(85.3)	113(14.7)	701(88.3)	74(9.3)	19(2.4)
8	폭력조직을 결성하는 데 주동하거나 가담한 경우	737(95.7)	33(4.3)	717(90.5)	59(7.4)	16(2.0)
9	외부의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740(96.6)	26(3.4)	728(91.9)	45(5.7)	19(2.4)
10	칼이나 둔기로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756(98.6)	11(1.4)	753(95.2)	29(3.7)	9(1.1)
11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703(91.5)	65(8.5)	648(41.5)	127(16.0)	20(2.5)
12	학교 건물에 고의로 방화한 경우	730(95.2)	37(4.8)	713(90.0)	65(8.2)	14(1.8)

집단적, 지속적으로 친구를 따돌려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경우, 징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3퍼센트, 칼이나 둔기를 소지한 경우 81.3퍼센트, 친구를 개인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힌 경우 76.4퍼센트, 상습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통신에서 언어폭력을 사용한 경우 58.8퍼센트, 혼자서 타인을 구타한 경우 48.0퍼센트의 순으로 징계한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볼 때, 흉기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집단 폭력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학교에서 강하게 징계하고 있는 한편 친구를 집단적, 개인적으로 따돌리는 경우, 언어 폭력 등에 대해 징계하고 있다고 반응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응답자들의 판단과도 일치하여 전자의 경우, 후자에 속하는 문항들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9) 학생 자치활동 및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

학생 자치활동 및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에 관한 부분에 있어 징계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수업거부, 동맹휴학 등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로 91.3퍼센트가 반응하였으며, 다음으로 백지 동맹이나 시험 거부 등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가 90.8퍼센트로 반응하여 수업이나 시험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학교들이 징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온 서적을 은닉, 탐독하거나 교내에 불온 낙서를 한 경우 82.9퍼센트, 불법 집회에 참석한 경우 80.7퍼센트,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간행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 79.3퍼센트,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써클을 만든 경우 79.2퍼센트,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정치활동을 한 경우 78.2퍼센트, 학교장의 허가 없이 모금행위를 한 경우 76.0퍼센트,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외부 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경우 67.2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

에서 인정하지 않는 집회나 행사의 참석, 간행물 제작 등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의 판단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수업거부나 동맹 휴학에 대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6.0퍼센트이며, 백지동맹이나 시험거부 등에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5.7퍼센트이다.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외부단체의 행사 참여시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퍼센트에 그친 반면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좋겠다는 비율은 37.9퍼센트였으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써클을 만든 경우에도 징계해야 한다는 반응은 41.8퍼센트, 학생자치 규율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퍼센트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2> 학생 자치활동 및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 상태 및 응답자들의 판단

단위 : 명(%)

일련 번호	규 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간접 할 필요가 없다
1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써클을 만든 경우	603(79.2)	158(20.8)	330(41.8)	334(42.3)	126(15.9)
2	학교장의 허가 없이 모금행위를 한 경우	577(76.0)	182(24.0)	405(51.3)	290(36.7)	95(12.0)
3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간행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	596(79.3)	156(20.7)	398(50.5)	305(38.7)	85(10.8)
4	불온서적을 읽거나, 탐독하거나, 교내에 불온 낙서를 한 경우	629(82.9)	130(17.1)	503(63.7)	228(28.9)	59(7.5)
5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정치활동을 한 경우	587(78.2)	164(21.8)	383(48.5)	291(36.9)	115(14.6)
6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는 외부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경우	509(67.2)	248(32.8)	286(36.2)	300(37.9)	205(25.9)
7	불법집회에 참석한 경우	611(80.7)	146(19.3)	448(56.9)	249(31.6)	91(11.5)
8	백지동맹이나 시험거부 등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692(90.8)	70(9.2)	519(65.7)	195(24.7)	76(9.6)
9	수업거부, 동맹 휴학 등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694(91.3)	66(8.7)	520(66.0)	188(23.9)	80(10.2)

10) 학교규율에 관한 집단간 의견차이 분석

한편 옷, 신발, 두발 등 복장에 관한 규율,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품행에 관한 규율, 학교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율, 학생의 근태에 관한 규율, 음주, 흡연 약물복용에 관한 규율, 풍기 문란에 관한 규율, 금품 절취에 관한 규율, 폭력행위에 관한 규율, 학생자치활동 및 집단행동에 관한 현재의 규율상태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과연 그러한 학교 규정을 어겼을 때 징계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 자치규율로 두는 것이 좋은가, 아예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집단간의 생각의 차이를 지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학생에게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강권하거나 공급한 경우의 문항에 대해서만 집단간의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0.115$), 교내에서 이성의 학우에게 성적인 야유를 한 경우, 부녀자를 폭행하거나 희롱한 경우, 조직적인 금품 절취에 가담한 경우, 절취사건으로 시범기관의 형을 받은 경우, 상습적인 도박이나 금품을 목적으로 한 사행행위를 한 경우, 친구를 개인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힌 경우는 .01수준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학우에게 성적 야유를 한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교사집단 83.4퍼센트, 학부모 80.1퍼센트, 학생들은 70.6퍼센트인데 비해,

<표 IV-13> 학우 성적 야유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단위 : 명(%)

집단구분 학우 야유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징계해야 한다	117(83.4)	109(80.1)	362(70.6)	588(74.4)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23(23.8)	25(18.4)	111(21.6)	159(20.1)
간섭할 필요없다	1(0.7)	2(1.5)	40(7.8)	43(5.4)
계	144(100.0)	136(100.0)	513(100.0)	798(100.0)

$$\chi^2=19.789 \quad P=0.001$$

간섭할 필요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7.8퍼센트, 학부모 1.5퍼센트, 교사 0.7퍼센트가 응답하여,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 비해 경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간섭할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들이 교사와 학부모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집단간 의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녀자를 폭행하거나 희롱한 경우, 교사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7.9퍼센트였으며, 학부모 95.6퍼센트였고, 이를 두 집단에 있어 부녀자를 폭행 및 희롱한 것에 대해 간섭할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경계해야 한다가 90.5퍼센트였으며,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6.2퍼센트였으며, 부녀자 폭행 및 희롱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3.3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표 IV-14> 부녀자 폭행 및 희롱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단위 : 명(%)

집단구분 부녀자 폭행 및 희롱	교사	학부모	학생	계
경계해야 한다	140(97.9)	130(95.6)	469(90.5)	739(92.7)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3(2.1)	6(4.4)	32(6.2)	41(5.1)
간섭할 필요없다	0(0.0)	0(0.0)	17(3.3)	17(2.1)
계	143(100.0)	136(100.0)	518(100.0)	797(100.0)

$$\chi^2=13.753 \quad P=0.008$$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풍기문란에 대한 규율에 이어 금품 절취에 대한 규율가운데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규율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적인 금품절취에 가담한 경우, 교사들은 98.6퍼센트가 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4퍼센트가 학교규율로 두면 좋겠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들은 각각 96.4퍼센트, 3.6퍼센트가 응답하였다. 반면 학생들은 90.7퍼센트가 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6.6퍼센트가 학교규율로 두면 좋겠다고 응답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경우 학교규율로 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교사나 학부모들의 반응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5> 조직적 금품 절취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단위 : 명(%)

집단구분 조직적 금품 절취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정계해야 한다	141(98.6)	132(96.4)	466(90.7)	739(93.1)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2(1.4)	5(3.6)	34(6.6)	41(5.2)
간섭할 필요없다	0(0.0)	0(0.0)	14(2.7)	14(1.8)
계	143(100.0)	137(100.0)	514(100.0)	794(100.0)

$$\chi^2=15.205 \quad P=0.004$$

절취사건으로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경우, 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가 97.9퍼센트, 학부모 91.8퍼센트, 학생들은 89.3퍼센트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학교 자치 규율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 8.2퍼센트, 학생 8.0퍼센트, 교사 1.4퍼센트였다. 아예 간섭할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2.7퍼센트, 교사 0.7퍼센트가 응답해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6> 절취사건으로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단위 : 명(%)

집단구분 절취사건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징계해야 한다	140(97.9)	123(91.8)	460(89.3)	723(91.3)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2(1.4)	11(8.2)	41(8.0)	54(6.8)
간섭할 필요없다	1(0.7)	0(0.0)	14(2.7)	15(1.9)
계	143(100.0)	134(100.0)	515(100.0)	792(100.0)

$$\chi^2=13.899 \quad P=0.008$$

상습적인 도박이나 금품을 목적으로 한 사행행위를 한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96.5퍼센트였으며, 학부모 95.6퍼센트, 학생 87.8퍼센트였다. 한편 학교 자치 규율로 두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집단이 가장 높아 8.0퍼센트를 나타냈으며, 학부모 4.4퍼센트, 교사 2.8퍼센트의 순으로 응답하여 다른 항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경우, 학교자치 규율로 두자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7> 사행행위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사행행위	단위 : 명(%)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징계해야 한다	138(96.5)	130(95.6)	452(87.8)	720(90.7)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4(2.8)	6(4.4)	41(8.0)	51(6.4)
간섭할 필요없다	1(0.7)	0(0.0)	22(4.3)	23(2.9)
계	143(100.0)	136(100.0)	515(100.0)	794(100.0)

$$\chi^2=16.743 \quad P=0.002$$

친구를 개인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힌 경우에 대한 집단간의 의견의 차이도 .01수준에서 통계적 의미를 나타냈다. 친구를 개인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힌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86.6퍼센트, 학부모 77.9퍼센트, 학생들은 70.6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자는 의견은 학생 23.9퍼센트, 학부모 20.6퍼센트, 교사 12.7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섭할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생 5.3퍼센트, 학부모 1.5퍼센트, 학생 0.7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집단간의 견해를

<표 IV-18> 친구의 따돌림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친구의 따돌림	단위 : 명(%)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징계해야 한다	123(86.6)	106(77.9)	361(70.8)	590(74.9)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18(12.7)	28(20.6)	122(23.9)	168(21.3)
간섭할 필요없다	1(0.7)	2(1.5)	27(5.3)	30(3.8)
계	142(100.0)	136(100.0)	510(100.0)	788(100.0)

$$\chi^2=19.060 \quad P=0.001$$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경우($P=0.022$)와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경우($P=0.029$), 칼이나 둔기로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P=0.016$)는 .05수준에서 통계적 의미를 보이고 있다.

본드나 대마초, 환각제 같은 마약류를 복용한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 98.6퍼센트, 교사 97.9퍼센트, 학생 92.6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자체 규율로 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5.0퍼센트, 교사, 학부모들은 각각 1.4퍼센트가 응답했으며, 간섭할 필요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3퍼센트, 교사 0.7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IV-19> 마약류 복용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단위 : 명(%)

집단구분 마약류 복용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징계해야 한다	141(97.9)	136(98.6)	479(92.6)	756(94.6)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2(1.4)	8(1.4)	26(5.0)	30(3.8)
간섭할 필요없다	1(0.7)	0(0.0)	12(2.3)	13(1.6)
계	144(100.0)	138(100.0)	517(100.0)	799(100.0)

$$\chi^2=11.485 \quad P=0.022$$

성폭행에 가담한 경우,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와 학부모집단이 각각 97.9퍼센트, 학생 92.1퍼센트였다. 한편, 학교자치 규율로 두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4.8퍼센트, 학부모 3.0퍼센트, 교사 1.4퍼센트의 순으로 응답하여, 학생들의 경우 성폭행에 관한 사건에 관한 규율도 학교 자체 규율로 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0> 성폭행 가담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집단구분		단위 : 명(%)			
성폭행 가담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징계해야 한다	140(97.9)	131(97.0)	477(92.1)	748(94.0)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2(1.4)	4(3.0)	25(4.8)	31(3.9)	
간섭할 필요없다	1(0.7)	0(0.0)	16(3.1)	17(2.1)	
계	143(100.0)	135(100.0)	518(100.0)	796(100.0)	

$$\chi^2=10.777 \quad P=0.029$$

칼이나 둔기로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교사들은 100퍼센트가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들은 96.4퍼센트가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학교자치 규율로 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6퍼센트였다. 학생들은 93.5퍼센트가 징계해야 한다, 4.7퍼센트가 학교자치 규율로 했으면 좋겠다, 간섭할 필요없다가 1.8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1>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집단별 교차분석

집단구분		단위 : 명(%)			
폭력 상해		교사	학부모	학생	계
징계해야 한다	143(100.0)	132(96.4)	478(93.5)	753(95.2)	
학생자치 규율로 둔다	0(0.0)	5(3.6)	24(4.7)	29(3.7)	
간섭할 필요없다	0(0.0)	0(0.0)	9(1.8)	9(1.1)	
계	143(100.0)	137(100.0)	511(100.0)	791(100.0)	

$$\chi^2=12.167 \quad P=0.016$$

위에서 살펴본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규율에 관한 모든 문항에 있어서는 $P=0.000$ 으로 매우 의미있는 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학생들은 학생 자치 규율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반응과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문항들이 대부분이었다.

5. 학교 규율에 첨가되어야 할 규정

학교 규율에 첨가될 규정에 대해 물어본 문항은 자유로이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한 사람이 여러 내용을 기술해도 되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이 많이 응답하였는데 주로 학생들은 규율을 완화하거나 일부 규율을 없애주기를 바랐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발이나 복장 규율의 완화 내지는 자율화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었다.

응답한 교사들 중 상당수는 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체벌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 아울러 학교 생활에서 질서와 관계된 내용으로, 점심시간 예비종이 울리면 운동장에서 하던 일은 멈추고 모이거나 교실로 입실하는 행동을 취한다, 수업태도 정숙, 수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경고나 상담을 하고 심한 경우 처벌한다, 수업시간에 수업태도 불량학생 징계 규정 필요,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 소란, 수업거부 등의 소수 학생들의 행동 제약에 관한 규율 필요,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타인을 방해하거나, 무조건 엎어져 자는 행위에 대해서도 방임하지 말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교화하고, 규율 속에 넣어야 한다 등이 있었다.

그 외에 고의적으로 시험에 불참 및 성적이 불량한 경우 유급제 적용, 규율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한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를 호출할 권한이 있고 담임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위반학생을 일정기간동안 지도한다, 징계 시 학생의 반론권 보장, 도덕성, 환경보전, 질서, 예절 등에 관한 규

정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CHEATING(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베끼는 것까지) 엄격히 처벌 등이 있었다.

응답한 학부모들은 규율의 강화와 규율의 완화가 서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특히 여학생 학부모의 경우 두발이나 복장 등에 대한 자율화를 요구하였다. 강화되어야 할 규율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시에 반드시 시간 엄수하여 공부할 것(도중에 빠지는 경우 처벌), 흡연, 음주, 화장에 대한 처벌, 머리의 길이를 몇 cm로 규정하기 바란다, 손톱, 메니큐어 금지, 짧은 교복치마 및 짹 달라붙는 교복 착용 금지, 너무 연예인들의 유행에 많이 치우치는데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남의 교과서를 훔친 자에게 처벌 등의 의견이 있었던 반면,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학생들은 겨울에 살색, 커피색 스타킹도 신을 수 있게 한다, 머리핀 등 간단한 장식 품의 규제는 완화 또는 자유를 주었으면 한다,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썬클 활동을 권장했으면 좋겠다, 교복에 너무 얹매이는 경향이 있어 완화 규정이 있었으면, 머리를 자유롭게 개성을 살리도록 해주는 방안, 자유로운 썬클 활동, 여학생들 겨울 교복을 바지나 치마 자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등을 들고 있다.

기타 규율과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규율도 좋지만 특별활동을 통한 학생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한다, 예체능반을 따로 만들거나 예체능 학생은 방과후 보충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다, 학교 급식을 충분히 보급해서 공평하게 잘 먹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고, 그 외에 사소한 교칙 위반으로 흥한 상처를 주는 체벌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 권위를 한층 높이고 이에 대한 규율도 엄격히 하면 좋겠다, 선생님의 태도도 학생에게 모범이 되게 규율로 정하면 좋겠다, 현 시대에 맞는 학교 규율을 구성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복장과 두발의 자율화를 요구하였다. 두발 자율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① 머리 길다고 해서 단정 안한 것도 아니고 머리

가 짧으니까 무스나 젤을 빌라 멎을 낸다. ② 아이엠에프 시대에 머리 자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머리 자르기도 힘들다. ③ 머리가 짧으면 편을 꽂아도 머리가 내려와 수업을 방해하며 단발보다는 하나로 묶는 편이 깔끔하고 보기 좋을 것 같다. 또 우리 학교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우릴 중학생으로 보기도 한다. ④ 옛날 어른들은 학교 다닐 때 머리를 길러서 묶고 다녔다. 그 때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 것이 단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일텐데 요즘에는 머리 기르는 것이 단정치도 못하고 학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리고 머리를 기른다고 학생이 아닌 것도 아닌데 머리 기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⑤ 머리가 길다고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단발보다 요란하지 않고 깔끔하고 하나로 묶는 규정을 만들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다 등이 있었다.

복장은 교복 폐지하고 사복을 입자는 주장에서 교복을 약간 변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며 신발 자율화나 기타 악세사리 착용 허용을 요구하는 학생도 많았다. 겨울에 외투를 자유로이 입도록 하자는 주장도 많았다.

교사의 욕설이나 체벌을 금지하자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교사가 이런 것을 어겼을 경우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법 나왔다. 그리고 또한 교사를 학생들이 평가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교사도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등학생의 경우 6명이 나왔다. 교사들도 파마를 하지 말거나 교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등 학생이 지키는 각종 규율의 일부를 같이 지키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교사의 욕설이나 체벌금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대신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두발이나 복장의 자율화를 약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핸드폰이나 삐삐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그 이외의 응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고등학생>

- 공부시간에 타인의 공부(수업)을 방해할 경우 봉사활동 시키기(실외로 내쫓기)
- 누가 돈을 뺏고, 꾸고 안 갚고, 흡연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
- 지금 규정 중 없애고 싶은 것은 많은데 더 첨가할 것은 없다.
- 힘이 세다고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에 대한 징계
- 선생이 너무 엄격해서 규율을 약화시키도록
- 잘못한 선생님들도 학생들처럼 징계를 받는 규정
- 더 이상 무엇을 더 어떤 규정을 덧붙인단 말이오.
- 학교 내에 조직폭력배 학생을 징계한다.
- 실내화를 훔쳐가지 않도록 엄한 규정을 만든다.
-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무조건 선생님들 마음대로 정하는 건 좋지 않음)
-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규율을 다시 만들자.
- 지각하면 오리걸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겹다.
- 새로운 규정은 아니고 규정을 만든다면 확실히 실행했으면 좋겠다.
- 선생님들의 지나친 집착
-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야자를 강압적으로 시켜주세요.
- 좀더 우리에게 관심을
- 너무 규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규율을 정했으면 좋겠다.(선생님들 입장에서만 규율을 정하는 것 같다.)
-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변태 같은 선생님이 없었으면 한다.
- 선생님과 학생이 어느 누가 앞설 것이 없이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 차별은 싫다.(남녀 차별)
- 흡연 단속 강화
- 학생들이 부당한 학교 규율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번씩 준다.

- 기본적 학교 규칙은 꼭 지키도록 체벌 강화
- 학생회, 학생부, 학교운영 상황을 모든 학생에게 투명하게 한다.
-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
- 강제 보충수업 폐지
- 개성을 살릴 수 있게 해줌
- 방과후 마냥 벌서게 하는 것 없앰.
- 누구나 알고 있는 한국고등학교제도의 문제점과 폐단. 하지만 너 무나 튼튼하고 확고한 기존 교육벽을 깰 수 없고 깨지도 못하는 현실. 교사들의 개혁의지 부족, 단지 첨가할 학교규율이 아닌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문제점 수정 절실.
-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이성문제, 복장 두발, 수업시간에 그리 피해주지 않는 행위)라면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단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되어져야 한다.
- 선생님이 학생의 인사를 성심성의껏 받아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교과서 선정, 학교 규율 선정, 보충교재 선정 등 모든 것은 학생 회나 학생자치회와 같이 해결해야 한다.
- 수업 중 교사의 허락없이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한다.
- 절도를 저지른 경우 이름을 공개한다.
- 남녀의 반을 갈라놓아야 한다.
- 이동통신 소지하지 말 것.
- 침뱉지 말 것.
- 수업 시간에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 화장실에서 홉연으로 남에게 피해준 경우
- 이성 교제에 관한 규율
- 학생들 차별하지 않기
- 학생회장 출마 시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 에어콘 설치
- 체육관 개방

- CCTV를 곳곳에 깔아놓자.
-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흡연을 금한다.
- 여선생님들이 진한 화장이나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 학생들을 힘으로 다스리지 말고 대화로 한다.
- 규율이 잘 안지켜지고 있고 선생님들도 포기하고 규제하지 않는 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 자유로운 이성 교제
- 개인적인 사유로 학생에게 피해주는 경우(선생님들이....)
- 사물함 설치해 주세요
-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다수의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 화장하는 사람 좀 엄격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 학원 폭력은 잘 안 알려지기 쉬우니 꼭 조사를 하거나 해서 없애 게 해주세요.
- 담배를 피는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 징계 먹고 사회봉사 했으면 좋겠다.
- 교복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입든 상관 안했으면 좋겠다.
- 너무 강제적으로 규율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담배 피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혼나도 어차피 또 피게 되므로 담배에 대한 비디오 시청이나 병원에 직접 가서 선생님과 함께 담배핀 환자를 만나 몸소 느낄 수 있게 해야만 한다.
- 학교 규율이 너무 많아서 좀 뺏으면 좋겠다.
- 학교 규율이 너무나 답답하고 필요없는 것도 많은 것 같다.
- 흡연에 관한 규율(학교에 오면 담배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 폭행에 관한 규율
- 언어폭행(함부로 욕설을 사용하는데 아주 몰상식해 보이고 인간 같지가 않다.)
- 불순한 이성교제를 금한다.
-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된다.
-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뺏은 악세사리는 하지도 말고 갖지도 말아야 한다.

- 학생들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학생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발 좀 들어주세요.
- 흡연장소 철저히 단속(화장실)
- 벌점은 없었으면 좋겠다.
- 흡연할 만한 장소에 선생님 배치

<중학생>

- 학생을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
-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넓혀 주세요.(학생들이 자유로이 쉴 수 있는 곳 개설)
- 매점 가는 것 허용
- 강당을 쓸모있는 일이 있을 경우 쓰게 해주세요.(고등학교와 같이 쓰니 불편해요)
- 학교기물을 다른 학교와 구분해서 씁시다.(장구, 북, 팽과리 등)
- 고등학교 언니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폭력문제)
- 더욱더 많은 썬클 활동
- 학교 규율을 담임이 바꾸지 말기
- 사고를 쳐도 학교에서 집에 연락하지 말고 처리했으면
- 수요일은 4교시만
- 학생의 사정으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으면 그것으로 혼내시는 선생님
- 학생들이 규율을 어겼을 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 새롭게 도입
- 젤, 무스, 스프레이를 바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 학생 의견도 많이 들어주어야 한다.
- 새로운 클럽 활동이나 동아리를 만드는 것
- 선도부원들이 아는 사람은 봐주며 들여보내는 것을 보았다. 이런 것 좀 없었으면
- 자율 학습
- 실내화 소지 안하기
-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선생님들의 분별력 없

는 사고방식

- 아침 조회 폐지(특별한 이유가 없다. 교장선생님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
- 차별화된 선생님들의 잘못된 생각 버리기(학생 차별 금지)
- 시설을 좀 바꾸기
- 모든 일을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
- 학생들이 단정하고 그래야 된다면 선생님들도 파마 푸르고 단발 머리로 잘라야 한다.
- 수업 시간에 매점에서 음식물 팔지 않기
- 퇴학이나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왜 퇴학을 시키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나?(그냥 잘못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건 아닐텐데)
- 선도부: 만약 복장이나 머리가 걸렸다면 아침에 잡지 말고 이름만 쓰고 방과후나 별을 받으면 좋겠다. 아침에 선도부가 잡는 바람에 지각을 하게 된다.
- 실내화 신지 않고 실외화 신기
- 선생님이 계신대도 떠든다면 그 반을 처벌했으면 좋겠다.
- 아침 8시 30분까지 등교하면 그 이후는 문을 닫아 일찍 오게 했으면 좋겠다.
- 점심 시간에 너무 요란스러운 노래를 안 틀어주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 의견 무시하지 말기
-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한다.
- 메니큐어 검사, 무스 검사를 해야 한다.
- 투명한 화장실문을 안보이게 해야
- 아침조회는 교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 매점 품목을 늘리자.
- 신발, 가방은 아무거나
- CA가 없어졌으면(한달에 1번으로)
- 더욱 철저히 검사했으면
-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준다.
- 너무 많이 간섭하지 않는다.

- 충분한 학습 자료
- 매니큐어 정도는 허용
- 왕따를 시키거나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상해를 입혔을 경우
-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는 써클
- 학교 기물을 파손시켰을 때
- 폭력을 쓰면 혼나도록
- 염색이나 심한 악세사리 착용 금지
- 왕따 등 친구를 괴롭히는 것
- 불법 써클 조직 등
- 학교에서의 폭력을 없앤다.
- 왕따 시키지 않음
- 집단적으로 폭행하지 않기
- 금품 갈취
- 학생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교사 멋대로 하지 않는다.
-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 싫어하는 별명이나 욕을 하지 않는다.
- 가방의 색은 그대로 두고 모양은 달라져야 한다.
- 선생님과 선도부를 지도할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센스하지 않기
- 식품 자유
- 교복을 꼭 입고 다니도록
- 절도, 폭력, 폭행은 퇴학
-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해야
- 싸움을 하면 징계
- 한 아이를 괴롭히면 징계
- 교복을 꼭 입기
- 왕따 금지
- 써클 금지
- 학생들의 권리 보장

- 신발신고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 급식
- 1주일에 마지막 토요일은 사복
- 아이들을 좀더 자연스럽게
- 시설을 잘 고쳐주기
- 급식 제도
- 교내에서 성적인 만화나 글을 쓴 사람은 징계
- 운동장 규율
- 교내에서 신발 신기
- 시험 폐지
- 지각 규정 없애기(자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집이 멀어 늦을 수도 있다. 단 9시 전까지만 오면 된다.)
- 슬리퍼 신기
- 명찰 안달아도 되게
- 소지품 검사는 일주일에 한번
- 공공시설을 파괴하면 징계
- 무스, 스프레이 등은 사용 못하도록
- 시험문제를 절취하지 못하도록
- 집단 폭행
- 써클 만드는 것
- 돈주고 안 갚는 것
- 화장실을 깨끗하게
- 복도를 더럽히지 않기
- 매점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 8시 30분에 꼭 오기
- 선생님과의 약속 지키기
- 조회에 나오지 않으면 징계
- 심하게 싸움을 3번 하면 징계

6.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규율 준수 상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규율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교장 또는 학생부장의 성향에 따라 엄격하거나 느슨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6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필요하고 실질적이지 못한 규율은 이미 있으나마나하게 되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26.6퍼센트, ‘모든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4퍼센트로 응답자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만들어진 규율이 실제로는 별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모든 규율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4퍼센트에 그치고 있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 또는 학생부장의 성향에 따라 엄격하거나 느슨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사들은 66.2퍼센트, 학부모들은 53.4퍼센트, 학생들은 50.1퍼센트가 반응하였다. 불필요하고 실질적이지 못한 규율은 이미 있으나마나하게 되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표 IV-22> 현행 학교 규율 준수 상태에 관한 집단별 교차분석

단위 : 명(%)

집단구분 준수상태	교사	학부모	학생	계
모든 규율이 잘 지켜지고 있음	5(3.5)	17(13.0)	50(10.1)	72(9.4)
학교장, 학생부장의 성향에 따라 엄격하거나 느슨하게	94(66.2)	70(53.4)	248(50.1)	412(53.6)
실질적이지 못한 규율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35(24.6)	26(19.8)	143(28.9)	204(26.6)
모든 규율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음	8(5.6)	18(13.7)	54(10.9)	80(10.4)
계	142(100.0)	131(100.0)	495(100.0)	768(100.0)

$$\chi^2=20.664 \quad P=0.002$$

비율은 학생들이 28.9퍼센트, 교사들은 24.6퍼센트, 학부모들은 19.8퍼센트가 반응하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모든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응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학부모가 13.7퍼센트, 학생 10.9퍼센트, 교사 5.6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규율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은 13.0퍼센트, 학생 10.1퍼센트, 교사 3.5퍼센트로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생집단에 비해 학교규율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반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V-23> 규율을 어긴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법

단위 : 명(%)

지도방법	반응형태	반응	무반응	계
현행 선도 규정대로 지도	345(43.1)	456(56.9)	801(100.0)	
별점제의 누계에 따라 정계	219(27.3)	582(72.7)	801(100.0)	
학생회에서 자율적 선도활동	401(50.1)	399(49.9)	800(100.0)	
상담전문가 학교 순회 상담	283(35.3)	518(64.7)	801(100.0)	
타기관에 위탁하여 특별교육	244(30.5)	557(69.5)	801(100.0)	
대안교육 체제	211(26.3)	590(73.7)	801(100.0)	
전문적 심리치료사와 상담	330(44.9)	405(55.1)	801(100.0)	

7. 규율을 어긴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학교의 제 규율을 어긴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두 응답하도록 한 반응을 항목으로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항목은 '학생회에서 자율적인 선도활동을 벌

이고, 공동체적 학교생활을 통해 문제를 시인하고 교정하게 한다'가 50.1퍼센트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심리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재정지원을 해 준다'가 44.9퍼센트, '현행 선도규정대로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등의 지도방법으로 지도한다'가 43.1퍼센트,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 전문가가 학교를 순회하여 지도하여 상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가 35.3퍼센트, '환경, 생태 공동체나 종교시설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받되, 그 기간을 출석 받을 수 있도록 한다'가 30.5퍼센트, '별점제를 도입하여 별점의 누계에 따라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지도한다'가 27.3퍼센트, '가능한 대안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필요한 기간동안 대안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가 26.3퍼센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안교육의 형태, 별점제를 취하는 것, 타 기관을 통해 교육받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회의 자율적인 선도활동과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현행 선도규정대로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등의 지도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더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도 방법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교사의 경우, 학부모도 같이 지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몇 있었다. 또 국민 계몽을 주장하거나 학급 인원수 감축 등의 주변 여건 변화도 한 명씩 주장하였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 학부모 선도 교육이 동시에 수행되었으면..
- 학급인원 적정화(30명 이내)하여야 지도 가능.
- 수업 시 담임에 의한 상시 지도
- 부모의 가정 교육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상담치료 받으면 좋겠음.
- 국민 계몽 및 사회선도 차원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규율 강조를.
- 상담실의 자원을 활용하여 예방적, 발달적 차원의 집단 상담을 활성화한다. (예 : 인간관계 프로그램,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스트레스 감소 훈련 등)

학부모의 경우

- 짹짓기 : 둘 또는 셋으로 짹을 지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서로 청찬해주기를 실시한다.
-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함으로 규율의 필요성을 알기까지 깨우침의 기회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학생의 환경에 어울리는 지도방법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벌이나 징벌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다시 주어 선도함.

고등학생의 경우

대체적으로 체벌이나 무거운 징계보다 타이르거나 상담 등으로 잘 지도해주기를 바란다. 일부에서는 징계를 강화하거나 체벌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한 명씩 있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 학교 규율을 어기면 무조건 매로써 다스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 너무 선생님들 위주로 규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규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편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규율이 많다고 본다.
- 충분한 상담과 이해가 필요하다.
- 선생님의 말도 안되는 트집을 없애준다.
- 선생님들의 꾸지람은 참을 수 있으나 언어적 폭력(예 : 병신, 개새끼 등등), 정신적 폭력, 폭행 등은 참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분노를 못이겨서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이 일어난다.
- 규율을 어겼다고 지나치게 처벌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처벌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야 한다.

중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 학교교육을 어겼다고 해서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왜 학교의 규율을 어겼는지 원인을 차근차근 살펴본다. 절대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다.
- 선생님들이 규율을 어겼다고 폭력을 쓰지 않고 경고를 주었다가 채워지면 그에 따라서 벌을 받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한다.
- 잘 타이론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 알려주며 타일러준다.
- 특수 학교를 만들어 불량학생은 전학시킨다.
- 하루정도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주고 만약 제주가 발견된다면 그 끼를 살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V. 요약 및 결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생지도 규율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 학교규율 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규율들처럼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성격을 지닌 규율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민주시민의 훈련과정으로서의 학교생활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규율의 제·개정 절차를 민주적으로 바꿔 그 절차가 교육주체들이 규율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삼음으로써 여러 규율들이 실질적인 권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셋째, 규율의 적용이 합리적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학생보호도 문제고 교사들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도 문제다. 지킬 수 있는 규정을 공론화 시켜 교육주체들의 합의 아래 확정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규율은 권위를 가지고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즉결처분과 같은 교사체벌, 폭력도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결과보다도 동기를 중시하는 규율의 적용방식이 정착되고, 도덕적이고 교육적 측면에서 규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규율적용은 동기보다도 결과를 중심으로 규율이 적용되어 합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못한 경우가 많다. 학교 내에서 정신과 의사나 사회복지 전문가, 상담전문가 등의 전문직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규율위반과 처벌대상을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처벌과 선도를 결정하고 규율을 명백히 적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동기 중시의 입장에서 학생 처벌과 선도를 구분하고 선도의 경우는 전문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과 전문 정신과의 치

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다행이라 하겠다.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해결의 방안이 뒤따르도록 조치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규율은 ‘교수학습과 관련된 규율’과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규율’, ‘형법위반에 관한 규율’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율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 아니라 동기와 원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수학습과 관련된 규율은 실제로 교과담당 교사가 실질적인 평가권을 장악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가로서 인정되고 교사의 학생평가권이 전적으로 인정될 때, 수행평가의 일부로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학습방해나 학습태도의 불량은 그대로 점수와 연결되고 교실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그런 점수가 그대로 사정의 대상이 되어 재교육과 유급 등으로 연결된다면 수업방해, 태도불량 등이 학교규율로 규정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믿는다. 현재처럼 학생들을 교실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떠들어도 교실 내에서 교사의 간절한 부탁과 그렇지 않으면 체벌(폭력)로 해결되는 조건 속에서 나타난 규율이라 하겠다.

비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규율은 그 행위가 비도덕적이고 사회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면 철저하게 파악하여 문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형법위반에 관련된 규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절도와 강도 등 폭력행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그런 범법행위를 키우는 결과밖에 안된다. 학교문제를 벗어나 사회문제로 인식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학교가 학생들을 무조건 감싸안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동원하여 처벌해야 한다. 이런 행위가 학교내의 문제로 여기고 그에 따라 학교장, 담임교사 등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향도 사라져야 한다. 학교의 규율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형벌과 민법으로 다스

려져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단 동기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처벌과 교정이 구분되고 가능하면 치유차원의 교정 기회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장과 용모에 관한 규율’과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은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학생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론에 부치고 수시로 개정해 나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이며 교육적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여학생의 말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은 것이 결코 ‘죄’일 수 없다. 청소년이 담배 피우는 행위가 처벌대상만은 아니다. 남녀학생이 손잡고 다니는 행위가 성문란 행위일까? 학교 내의 공론을 확대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내’ 재판과 반론을 통해 끊임 없이 토론으로 이끌어 간다면 이런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교사들과 토론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며, 적어도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집단 행동에 관한 규율’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규제 규정’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폭력활동을 조직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엄연히 규제 대상이지만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활동들은 규제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독재정권이 학생들을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타난 이런 규율들은 집권세력의 집권부당성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된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하면 금방 선거권을 획득하며 그들의 정치적 활동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는 있다. 건전한 집단 활동과 자주적 학생회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래(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서울: 교육과학사.
- 노혜련(1995).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21호(95.6). pp. 17-32.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 배경내(1998).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춘석 편역(1998). 세계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결의들. 경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청년원.
- 이명숙(1995). 청소년생활법률의 이론적 기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1990). 학생자치활동 1. 2. 서울: 푸른나무.
- 정기원, 오미영(1994).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1997).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서울: 참여연대.
- 최윤진 편저(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양서원.
- 최충옥(1991).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소외.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2000년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pp. 46-54.
- Angel, William D(ed.)(1995). *The international law of youth rights - source documents and commentary*.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Freeman, Michael(ed.)(1996). *Children's rights: a comparative perspective*. Brookfield, Vermont: Dartmouth.
- Kahane, Reuven(1997). *The origins of postmodern youth: Informal*

- youth movement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Walter de Gruyter.
- Matthews, G.B.(1994). *The philosophy of childhood.*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Options for school regulations based on the teacher-students' survey

Chun, Se-Young

This study was launched with the purpose to provide with base information for policy options to design new paradigm of the school regulations, which w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rights and freedom of the young people and build a better school community. The basic approach in this line of thought was driven from the understanding that the present regulations are obstructing the cultivation of self-regulating youth in various forms.

Achieving this aim, two major methods of study were employed. At first, various perspectives about school regulations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ir *raison-d'etres* and necessities of change. And next, the opinion survey on the present regul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conducted for 144 teachers, 138 parents and 519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Chungnam regions.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χ^2 statistics by SPSS packag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can be reported in two areas: the problems and solutions.

The first problem with school regulations is related to their rigidness and uniformity. Each rule does not have the solid acceptance and authority among both teachers who guide and students who

follow. For students they are regarded just as the interference and control not the discipline and training. The second problem is related to their characteristics of restraining individualities of the young people. Particularly all sorts of regulations about the costumes and hair-styles do not match with present culture of the young people any longer, though some of them might have been fit with those old generation in the past. Moreover a certain set of regulations may violate the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and the youth. Among them are included so much details of the appearances such as colors and shapes of the cloths, length of hair and so on. Students' associations and group activities are also excessively controlle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excessive rules regarding the appearances and student associations must be expelled or reduced for the most. However, regulations about school disorders and immoral behaviors against others should be sustained and kept strongly.

In conclusion, the control oriented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into the autonomy oriented ones, and the guardian types should be replaced by the participatory types.

부 록

학교 규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교사, 학부모, 학생 동일)

이 설문지는 올해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자유연구주제의 하나인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 탐색 연구’의 조사·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1. 선생님의 학교에 대한 기초조사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1) 급별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 2) 학교 위치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면소재지()
 - 3) 학교 형태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 4) 학교규모 ① 18학급 이상() ② 8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③ 8학급 미만()
2. 현재 선생님의 학교에 제정되어 있는 학생선도규정, 체벌규정, 복장규정 등 제 규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1) 학년초에 공개되어 잘 알고 있다.()
 - 2) 학생부가 규제하는 것으로 마루어 어렵롯이 알고 있는 정도다.()
 - 3) 잘 모른다.()
3. 학교의 제 규정은 어떤 절차로 제정되고 있습니까?
 - 1)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하면 교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정한다.()
 - 2)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다.()
 - 3)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학생부가 기획하고 학교장이 결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제정한다.()
 - 4) 어떤 절차로 학교의 제 규정들이 제정되는지 잘 모른다.()
 - 5) 기타()
4. 학교 규율은 어떤 절차를 거쳐 제정 및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총학생회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 2) 교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
- 3) 학생부가 초안을 만들고, 교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 4) 기타()
5. 다음은 현재 여러 학교에서 제정하고 있는 학교규율들입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현재 선생님의 학교에서의 상황과 선생님의 판단을 선택하여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옷, 신발, 두발 등 복장에 대한 규율

순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접할 필요가 없다
1	학생은 교내외의 학습장과 외출 시에 교복을 상용하여야 한다.					
2	허가 없이 교내에서 교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없다.					
3	교복의 폭이나 길이를 줄이는 등 학교교복의 원래 형태를 임의로 변형할 수 없다.					
4	외투는 학생용만 허용하며 색상이 화려한 일반외투를 입을 수 없다.					
5	전·후면에 외래어가 표기된 걸옷을 입을 수 없다.					
6	학생외투가 아닌 짐바류의 걸옷을 입을 수 없다.					
7	속옷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8	화려한 티셔츠를 속옷으로 입는 것을 금한다.					
9	학생은 얼굴에 화장을 할 수 없다.					
10	손·발톱에 일절 매니큐어를 바를 수 없다					
11	두발은 정해진 길이를 지켜야 한다. (귀밑 5센티, 앞머리 3센티 등)					
12	두발의 형태는 남학생은 스포츠형, 여학생은 단발 및 커트머리로 정해진 형태를 지켜야 한다.					

순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3	무스, 스포레이 등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					
14	염색, 파마 등을 할 수 없다.					
15	신발은 단정한 운동화나 학생용 단화를 허용한다. 굽이 높거나, 색상이 화려하거나, 발목 위까지 길이가 긴 신발, 샌들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16	가방은 등에 매는 학생용 가방만 허용하며, 협오감을 주는 외래어 표기나 그림이 있는 가방, 서류가방, 자루가방 등을 금한다.					
17	여학생 머리핀이나 머리끈은 검은색, 갈색, 감색 등만 허용하고, 화려한 장식이나 머리핀 등을 금한다.					
18	일체의 팔지, 귀걸이, 반지 등을 착용할 수 없다.					
19	양말은 검은색, 흰색으로 허용하고, 성인용 스타킹이나 강한 원색의 양말은 금한다.					

2)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품행에 관한 규율

순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상습적으로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는 경우					
2	수업 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3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					
4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군것질을 하거나 만화책 등 다른 책을 보는 경우					
5	휴대폰, 흐울기 등으로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경우					
6	수업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경우					
7	개인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경우					

3) 학교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율

순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침뱉기, 쓰레기 투기, 소란 등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					
2	학교 출입시 월장(담을 넘어가는 것)한 경우					
3	체육대회, 소풍 등 학교 단체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4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경우					
5	시험 문제지를 사전 입수하여 문제를 누설한 경우					
6	고사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공납금을 유용한 경우					
8	성적표, 출석부, 학급일지 등 제반 공문서를 변조·파손하거나 제증명을 위조한 경우					
9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한 경우					
10	교사에게 욕설을 한 경우					
11	교사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					

4) 학생의 근태에 관한 규율

순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를 3회 이상 한 경우					
2	무단 결석 및 단순 가출 등으로 출결이 무상한 경우					
3	상습적으로 무단 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석을 한 경우					
5	주변 근무, 청소당번 등을 태만히 한 경우					

5) 음주, 흡연, 약물 복용에 관한 규율

순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과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온폐된 장소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2	술, 담배 등을 소지한 경우					
3	공공연히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4	다른 학생에게 흡연이나 음주를 강요한 경우					
5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으로 흡연 또는 음주하여 주민으로부터 신고된 경우					
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경우					
7	다른 학생에게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강권하거나 공급한 경우					

6) 풍기문란에 관한 규율

순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과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는 행위를 한 경우					
2	교내에서 이성과 껴안는 행위를 한 경우					
3	음란서적, 외설 및 폭력 만화, 음란 비디오나 CD를 소지한 경우					
4	비디오방, 인터넷 게임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5	다른 학생들에게 음란서적 등을 윤독하게 한 경우					
6	성인전용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					
7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교내에서 이성의 학우에게 성적인 애유를 한 경우					
9	교내에서 이성의 교사에게 성적인 애유를 한 경우					
10	부녀자를 폭행하거나 희롱한 경우					
11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경우					

7) 금품절취에 관한 규율

순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학용품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2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의 신발이나 체육복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					
3	상점에 외상값을 갚지 않아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상습적으로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경우					
5	교내의 물품이나 기자재를 은닉하여 반출한 경우					
6	타인의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하거나 강탈한 경우					
7	조직적인 금품 절취에 가담한 경우					
8	절취 사건으로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경우					
9	상습적인 도박이나 금품을 목적으로 한 사행 행위를 한 경우					

8) 폭력행위에 관한 규율

순	규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칼이나 둔기를 소지한 경우					
2	상습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통신에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경우					
3	혼자서 타인을 구타한 경우					
4	친구를 개인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힌 경우					
5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경우					
6	이유 없이 하급생을 괴롭히고, 폭력을 가한 경우					

순	규 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7	집단적, 지속적으로 친구를 따돌려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경우					
8	폭력조직을 결성하는 데 주동하였거나 가담한 경우					
9	외부의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10	칼이나 둔기로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11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12	학교 건물에 고의로 방화한 경우					

9) 학생 자치활동 및 집단행동에 관한 규율

순	규 정	현재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항목을 어겼을 경우		내 판단으로는		
		혼내거나 징계한다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 해야 한다	학생자치 규율로 두면된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1	학장이 허가하지 않는 써클을 만든 경우					
2	학장의 허가 없이 모금행위를 한 경우					
3	학장이 허가 안한 간행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					
4	불온서적을 읽느니, 탐독하거나, 교내에 불온 낙서를 한 경우					
5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정치활동을 한 경우					
6	학장이 허가하지 않는 외부단체 행사에 참석한 경우					
7	불법집회에 참석한 경우					
8	백지동맹이나 시험거부 등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9	수업거부, 동맹 휴학 등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6. 기타 반드시 새로운 학교 규율에 첨가되어야 할 규정이 있다면 직접 써 주십시오.

- 1)
- 2)
- 3)
- 4)
- 5)

7.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규율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모든 규율이 자율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 2) 학교장, 또는 학생부장의 성향에 따라 엄격하거나 느슨하게 지켜지고 있다.()
- 3) 불필요하고 실질적이지 못한 규율은 이미 있으나마나하게 되어 지켜지지 않는다.()
- 4) 모든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8. 학교의 제 규율을 어긴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좋다고 생각되는 것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 1) 현행 선도규정대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지도방법으로 지도한다.
- 2) 별점제를 도입하여 별점의 누계에 따라 징계를 하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 3) 학생회에서 자율적인 선도활동을 벌이고, 공동체적 학교생활을 통해 문제를 시인하고 교정하게 한다.()
- 4) 청소년 상담실의 상담전문가가 학교를 순회하며 지도하여 상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
- 5) 환경, 생태 공동체나 종교시설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받되,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6) 가능한 대안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필요한 기간동안 대안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7) 심리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와 상담할 있도록 연결해주고 재정지원을 해준다.()
 - 8) 기타()

♣ 모두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정책 연구 ◆

- 99-R 08 「유해업소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심영희·윤옥경·이재순·전경숙·정혜영
- 99-R 09 「2000년대를 향한 경기지역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연구」 함병수·이종원·황진구·김영한
- 99-R 11 「학교 특별활동과 지역사회 수련활동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호·이태재·윤철경
- 99-R 12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이종원·정희욱·서정아
- 99-R 13 「청소년 대중문화 수용실태와 대책」 이민희·맹영임·정문성
- 99-R 17 「청소년관련 산업 및 복지투자에 관한 연구」 최충욱·임성택·서정아
- 99-R 18 「청소년 지도사 전문화 방안 연구」 이광호·정희욱·김진호
- 99-R 26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연구 개발」 김홍규·김영한·김진호
- 99-R 27 「청소년 정책·사업 종합평가방안 연구」 이종원·김영한·서정아
- 99-R 32 「특기·적성교육활동 개선방안 연구」 이광호·김안나·전명기·홍생표
- 99-R 33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윤철경·박창남·이인규
- 99-R 34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황창순·이혜연·김희진
- 99-R 35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박병식·전경숙·윤옥경·정혜영
- 99-R 38 「고졸 청소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강대근·박창남·윤옥경
- 99-R 43 「장애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개발」 박영균·김정렬·이혜연
- 99-R 45 「집단 따돌림 예방 및 지도대책 연구」 이춘화·이민희·임성택
- 99-R 46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의 활동동향 연구」 이용교·김영지·임지연
- 99-R 48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김경주·길은배·정희수
- 99-R 56 「21세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과 추진방향」 김정배·고원영·정익재

◆ 프로그램 개발 ◆

- 99-R 07 「청소년정책,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민희·김경준·주연미 (제5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신청작 모음집)
- 99-R 10 「신바람나는 민속놀이활동」 이혜연
- 99-R 14 「청소년 정보의식 함양프로그램 개발 방안연구」 황진구·임성택·김성희
- 99-R 19 「인터넷 정보활용」 (99 청소년수련거리 I) 김혁진·정익재·김진호
- 99-R 20 「인명구조」 (99 청소년수련거리 II) 김혁진·정익재·김진호